

뉴질랜드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6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8
2. 주요 산업 동향 /10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0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5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6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8
 - 대한수입규제동향 /32
 - 관세제도 /34
 - 주요인증제도 /35
 - 지적재산권 /37
 - 통관운송 /38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0
- 외국기업 투자동향 /46
- 우리기업 투자동향 /50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3
- 진출형태별 절차 /56
- 투자입지여건 /59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2
- 조세제도 /65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6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69
2. 물가정보 /71
3. 바이어발굴 /72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4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77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78
7. 이주정착 가이드 /79
8. 출장가이드 /84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뉴질랜드(New Zealand)
위치	대양주 남단
면적	270,534 km ² (남한의 2.7배) (북섬 11만 6,000 km ² , 남섬 15만 1,000km ²)
기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20도, 7월 평균 11도)
수도	웰링턴(Wellington)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구	4,249천 명(07년 12월)
주요도시	Auckland(130만), Christchurch(35만), Wellington(45만), Hamilton(13만)
인종	유럽인 250만(70%), 마오리 52만(15.8%), 아시아인(7%), 폴리네시아인(6.5%), 기타(0.7%)
언어	영어, 마오리어 (원주민어)
종교	기독교 약 51%('86년 73%), 비기독교 5%(86년 1.4%), 성공회 14%, 가톨릭 13%, 장로교 10%, 감리교 3%
건국일	1840. 2.6(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
국가원수	영국 Queen Elizabeth II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len Clark(노동당 당수) - 2005.9.17 총선에서 승리, 3년간 3기 연속 재집권 성공 ○ 다음 총선 예정: 2008년 11월

나. 경제지표

GDP	US\$ 128.5억('07추정)
경제성장률	3.2%('07 추정)
1인당 GDP	US\$ 26.7천('07추정)
실업률	3.5%('07년 3/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	2.4%('07년 말)
화폐단위	NZ Dollar(NZ\$)
환율	NZ\$1 = US\$0.71(2008년 8월 말 기준)
외채	US\$ 514억('07 추정)
외환보유고	US\$ 172억('07 추정)
산업구조	1차 산업(6.7%), 제조업(14.9%), 전기수도(1.8%), 건설(4.8%), 도소매 숙박(16%), 교통통신(10.5%) 금융-비즈니스 서비스(25.3%), 사회 서 비스(11.7%), 기타(8.3%)
교역규모	US\$ 564억(수출 US\$ 273억, 수입 US\$ 290억)('07)

자료: EIU 2008.09.02일자

다. 주요 교역품목

수 출	낙농제품, 육류, 목재, 양모, 수산물
수 입	기계류, 전기전자, 차량, 원유, 철강, 플라스틱

라. 한-뉴질랜드 관계

특수관계	1950년 한국전에 뉴질랜드 군인 6,020명이 참전, 45명이 전사함. 북한과는 2001.3.26 수교하였으나, 대사관 교환설치는 없음.
체결 협정	대사급 수교 ('62),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67.7), 어업협정('78.3) 국제운수소득 면세협정('78.12), 이중과세 방지협정('81.11) 항공협정('93.8), 사증 면제협정('94.8), 임업협력 협정('97.4), 과학기술 의정서('97.9), 취업관광사증 협정('99.5), 형사사법 공조협정('00.3), 방산물자 품질보증 약정('00.11), 범죄인인도조약 ('01.5), 영화공동제작 약정 ('05.11) 경찰협력약정('06.6), 농림부간 협력약정('07.4)
무역 규모	한국 수출 US\$ 699백만, 한국 수입 US\$ 1,171백만('07)
교역 품목	한국의 수출: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한국의 수입: 목재, 펄프, 피혁, 쇠고기
투자 교류	우리나라는 2007년 말 기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총 236건 US\$ 157,036천 규모(총 투자 기준)를 투자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치즈 제조를 중심으로 식품 제조와 전기 및 전자, 도소매업 등 63건 US\$ 38,044천의 대한 투자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교 민	2006년 3월 실시한 인구 통계조사에 의하면 뉴질랜드 교민은 모두 30,792명으로서 2001년도 조사시의 19,096명에 비해 61.8% 증가한 수치를 보임. 이는 뉴질랜드 내 아시안 인구 중 중국(147,570명)과 인도(104,58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며 전체 인구의 약 0.7%를 차지하는 비율임.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가조직

1) 행정부

뉴질랜드는 연방이 아닌 단일국가 (Unitary St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가 따로 없는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체제 (Two-Tier System)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원제의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음.

의원 내각제로 3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며 수상이 임명한 의원이 각료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있음. 이들 장관들은 정부 의사결정의

주도 역할을 하며 국무위원들은 정책 입안 및 정부주도의 법률안 제출과 행정 관장 및 세출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음.

사무차관(Chief Executive) 제도를 도입하여 장관(Minister)은 의원이 겸직하고 실무는 사무차관이 담당하고 있음. 지방 행정조직은 12개 Region, 15 개의 City, 59개의 District(74개 Territorial Authorities)로 각각 지방의회(Council)가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2) 사법부

뉴질랜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상소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 4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지금까지 최고 상고심은 영국 상원 산하의 추밀원(Privy Council)이었으나 2003.10.14 이를 청산하고 자체 대법원(Supreme Court)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음. 이는 1840년 와이탕이 (Waitangi) 조약에 의해 영국 식민지가 된 이후 무려 160년 만이며 2004년 7월 5명의 대법관이 구성되었음.

뉴질랜드의 사법제도는 우리와 비슷한데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이 있고, 주요 지방에 소재하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있음. 항소심으로서 고등법원(High Court)이 있으며 상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이 그 위에 위치하고 있음.

지방법원은 사실 심리를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고등법원은 쌍방 주장의 법적 원리를 분석해 어느 일방이 그 사건에서 법적 우위에 있는지를 판결함. 상소법원은 재판에서 패한 측이 하위 법원 판결이 법적 혹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들어 판결을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다룸.

이 외에 특정한 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Small Claims Tribunal, Labor Court, Maori Land Court, Children & Young Persons Court, Family Court Division, Dispute Tribunal 등이 있음.

판사는 우리와 달리 변호사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서 임용하며 실제로는 최소 15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임용되는 게 관례화 되어 있음.

뉴질랜드에는 한국과 같은 검찰청이 따로 없고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의 법률 업무는 왕실 변호사(Crown Solicitor)란 기관이 담당하며 수사권은 없음. 다만,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검사 역할, 즉 기소 변호사(prosecutor)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한 변호사 사무실이 그 업무를 맡아 하게 됨.

우리와는 달리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의 기능인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3) 의회

단원제 의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고 총선은 3년마다 실시되고 의원 정수는 120명임. (다만, 2006-2008 회기에는 특수 사정상 12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원 120명 가운데 지역구에서 67명, 정당투표에 의한 의원(전국구)은 53명으로 이루어지며 2005.9.17 총선거를 실시하여 50석을 얻은 노동당이 99년 이후 3기 연속 집권에 성공하였음.

의원 선출은 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1890년 이후 오랜 정당 정치 역사를 반영한 것으로 초기에는 자유당과 혁신당이 집권을 한 바 있으며 현재는 노동당과 국민당(자유당과 혁신당 통합)이 교차 집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총선은 3년마다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18세 이상인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1년 이상 거주)는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며, 유권자들은 정당에 한 표, 선거구의 후보자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혼합비례선거제도(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채택하고 있음.

의회구성은 의장(Speaker), 부의장(Deputy Speaker), 위원회 전체의장(Chairman of Committees),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정무장관(Minister of State) 그리고 18개에 달하는 분과 위원회(Select Committee)로 되어 있음.

나. 정치제도

1) 정치체제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나 일부 영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 Queen Elizabeth 2세가 겸임하는 입헌군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국가원수는 뉴질랜드 각의의 제청에 따라 임명되며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은 Anand Satyanand(최초의 유색인 총독)가 2006년 8월 취임함.

2) 선거 제도

개별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 3년 마다 총선이 있고 현재의 집권당인 노동당은 소수당과 연립으로 2005. 9. 17 총선에서 승리하여 지난 99년 11월부터 3기 연속 집권에 성공하였음.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국적 보유자와 1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영주권 보유자에게 부여(단 1개월 이상 해당지역 선거구에서 거주해야 함)되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자(영주권자 제외)에게만 부여됨.

3) 의회 민주주의 전통 유지

1852년 영국의 의회는 The New Zealand Constitution Act를 제정함으로써 뉴질랜드 의회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는 초석이 된 바 있으며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바 있음.

불문법 국가로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1986 이외에 영국법률 (Imperial Acts)과 역사적인 성문법(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이 헌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영국법률들은 뉴질랜드 국내법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에 열거되어 있음.

4) 의회구성 (Parliament 또는 House of Representatives)

임기 3년의 단원제 및 비례대표제로 구성되어 있고 의석 총수는 120석(지역구 67석, 전국구 53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국식 소선거구제에서 92년 9월 및 93년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현행 지역 비례혼합 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약칭 MMP)를 도입하였음.

정당별 득표 및 의석확보현황(2005년 총선결과)

정당명	정당득표	지지율	지역구	전국구	총 의석
Labour Party	935,319	41.10	31	19	50
National Party	889,813	39.10	31	17	48
New Zealand First Party	130,115	5.72	0	7	7
Green Party	120,521	5.30	0	6	6
Māori Party	48,263	2.12	4	0	4
United Future New Zealand	60,860	2.67	1	2	3
ACT New Zealand	34,469	1.51	1	1	2
Jim Anderton's Progressive	26,441	1.16	1	0	1
기타	29,828	1.30	0	0	0
총계			69	52	121

자료: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www.elections.govt.nz)

5) 국회 조직

- 의장(Speaker): Jonathan Hunt(노동당)
-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David McGee
- 정무장관(Leader of the House): Michael Cullen
- 14개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
 - Commerce / Education and Science / Finance and Expenditure /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 Government Administration / Health / Justice and Electoral / Law and Order / Local Government and Environment / Maori Affairs / Primary Production / Regulations Review / Social Services / Transport and Industrial Relations

6) 정당 제도

양당체제로 운영되며 여타 군소정당이 있고 지난 1996년 10월 총선에서 비례대표제(MMP)가 도입되어 국민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던 양상에서 탈피, 군소정당과 연계한 연립정부 구성이 계속되고 있음.

정당별 주요 정책으로는 노동당의 경우 중도 좌파성격이며 국민당은 중도우파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외에 연합당은 강한 좌파 성격을 띠고 있음

각료 명단 (2008년 9월 5일 기준)

구분	장관명	부처명
국무위원	Helen Clark	총리, 문화, 예술
	Michael Cullen	부총리, 재무, 고등교육, 와이탕이 조약, 법무장관, 협상
	Jim Anderton	농업, 수산업, 임업, 검역
	Phil Goff	국방, 교정, 무역, 군축
	Annette King	법무, 경찰, 교통
국무위원	Pete Hodgson	경제, 고등교육, 과학/기술, 연구
	Parekura Horomia	마오리족
	Chris Carter	교육, 소수민족,
	David Cuncliffe	보건, 통신 /IT
	Trevor Mallard	환경, 노동, 방송, 국유사업
국무위원	Ruth Dyson	사회복지, 고용, 노인, 지역사회/의용
	Lianne Dalziel	상업, 식품안전
	David Parker	국무, 에너지, 토지
	Nanaia Mahuta	세관, 지방정부, 청소년
	Clayton Cosgrove	이민, 체육 / 레저
국무위원	Rick Barker	내무, 민방위, 법정, 재향군인
	Damien O'Connor	관광
	Steve Chadwick	보존, 여성
	Maryan Street	ACC(사고보험처리기관), 부동산주택
	Shane Jones	건축
비 국무위원	Judith Tizard	소비자
	Harry Duynhoven	교통안전
	Luamanuvao Winnie Laban	태평양도서
	Mahara Okeroa	정무
	Darren Hughes	통계
	Winston Peters	외교, 인종 * First 당
	Peter Dunne	예산 * United 당

주: *** 국무위원(장관의 직함이 부처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자료: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주요이슈

양국간 교역규모가 크지 않고, 특히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미약하고 공산품의 수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되는 이슈는 없는 편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하며 현재로는 유력품목으로 현대자동차와 삼성 및 LG의 휴대폰 등 일부 품목만이 인지도와 진출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이며, 양국 간 FTA 타당성 검토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다. 2008년 5월 뉴질랜드 총리가 방한하여 양국 간 FTA 본 협상을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으나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본격 협상 시기를 다소 늦추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양국 간 현안이 적은 상태로 본 협상이 착수되면 1년 내로 협상이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FTA협상에서는 우리 농업시장을 개방하는 만큼, 우리 농민이 뉴질랜드로 투자이민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농업이민 자격요건 완화 등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다자간 무역 라운드인 도하개발 아젠다(DDA) 농업 및 서비스 협상에서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개방 일정 및 수준을 더욱 단축하고 확대하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2002.7.25 1차 한-뉴 개별 협상) 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뉴질랜드가 한국의 법률, 교육, 시청각, 건설, 유통, 환경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건축, 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서비스의 개방과 조산 및 간호 서비스의 진출, 통신, 건설, 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한 바 있다.

2003. 9. 13 멕시코 Cancun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뉴질랜드는 미국 등 케언즈 그룹의 일원으로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을 주장하여,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2006년 7월 럭비 경기장에서 한국산 굴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으로 현재 한국산 굴에 대해 수입이 잠정 금지되어 있다. 수입된 한국산 냉동 굴을 조리하지 않고 생굴처럼 먹은 것이 사고의 발단이며 조리하지 않고 생굴처럼 제공한 현지 케터링 업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사건이 자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한국산 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

나. 우호적인 대한 협력관계 유지

뉴질랜드는 한국전 참전 국가로 정치 외교분야에서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원만한 경제 및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경제성장으로 대한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한국전쟁 당시 6,020명의 전투병력을 파견하여 45명이 전사하는 혈맹국가로서, 아직까지 생존해있는 참전용사 수백 명은 한국의 발전을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음)

1999년 7월에는 뉴질랜드 최초의 여성 총리 Jenny Shipley가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 월 개최된 APEC 21개국 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한 바 있다.

현재의 총리인 Helen Clark(2005년 9월 3연임 성공)은 6회의 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방한은 2008년 5월이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추진을 공식요청 하였다.

다. 교역규모 및 무역구조

양국교역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97년 기준 양국 교역량은 US\$ 10억에 달했으나 '98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잠시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차 회복하였다.

2007년 대뉴 수출은 US\$ 699백만, 대뉴 수입은 US\$ 1,171백만을 기록했다.

2008년 7월말 기준 한국의 대뉴 수출은 US\$ 491백만으로 뉴질랜드의 7대 수입대상국이며, 대뉴 수입은 US\$ 698백만으로 뉴질랜드의 6대 수출대상국이다.

라. 교역품목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목재와 낙농제품 그리고 육류 등 1차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은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는 보완적 교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목재와 원목, 알루미늄, 양피, 펄프, 카세인, 치즈, 어류, 가죽, 소고기, 양모 등이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자동차, 타이어, 전자통신 제품, 컴퓨터, 종이, 플라스틱 원료, 가전제품, 중장비, 섬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마. 반덤핑 규제

우리나라는 2001년 6월 냉장고 및 세탁기, 2005년 1월 오일필터 등 3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았으나 2006년 6월로 냉장고와 세탁기 품목이 5년간의 규제기간이 종료되고 덤핑제소 업체의 추가 제소가 없어 반덤핑 규제가 해제되었다.

또한 오일필터의 경우 2006년 12월 뉴질랜드의 현지의 생산업체가 문을 닫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덤핑 규제가 해제되었고, 현재 반덤핑 규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제품은 없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성장률

2000년대 초 수년간의 호황 이후, '05, '06년에는 경기순환적인 성장 둔화가 있었으나, 2007년에는 국제 낙농제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원유수출도 급증하여 세계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3.2%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다.

2008년 3월, TIU는 뉴질랜드 경제도 세계경제 위축에 따라 1.8%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으나, 같은 해 9월 3일에는 동 성장률을 0.3%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발표했다.

나.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2006년 3.4%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 들어서 금리를 네 차례 각각 0.25% 포인트씩 인상한 바 있다.

금리인상에 따라 2007년 물가상승률은 2.4%로 안정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급매물 부동산이 출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세는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에는 중앙은행 금리를 8.25%

에서 8.0%로 인하하였으나, 전세계적인 고유가 여파로 2008년도 물가상승률은 관리 목표치인 1-3% 범위를 뛰어 넘어 4.1%에 이를 것으로 EIU는 전망하고 있다.

다. 환율

뉴질랜드는 1985년 환율 변동제를 도입하였는데, 2005년 미 달러 대비 NZ\$0.68 수준의 환율이 2007년 말 NZ\$0.77까지 올랐다. 2008년 3월 한 때 NZ\$0.81까지 치솟았으나, 9월 기준 NZ\$0.7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EIU는 뉴질랜드 금융당국이 이자율을 2009년 말에 6.7% 수준까지 인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뉴질랜드 달러화의 대미환율도 2009년 말에는 NZ\$0.6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80년대 이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05년 -US\$ 97억, '06년 -US\$ 94억, '07년에는 적자폭이 -US\$ 102억을 기록했다. 동 적자 규모는 GDP의 약 8%를 차지하는 숫자로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08년 9월 3일자 EIU 전망치에 따르면, 2008년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7.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 수출

2007년 수출은 전년대비 20.1%가 증가한 US\$ 269억에 이르렀고, '08년 1-7월에는 US\$ 193.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3%가 증가했다. 호주가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전통적인 교역국인 미국, 일본과 중국, 한국, 영국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08년 1-7월 기간 중 수출이 폭증한 나라는 태국 111.7%, 싱가포르 84.8%인도네시아 61.6% 등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최대 수출품인 치즈, 분유 등 낙농제품은 US\$ 56억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며 다음이 육류제품(소, 양), 목재류 순으로 수출된다. 호주에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 원유, 금 등이 수출됐으며 낙농품은 필리핀, 일본, 호주 등에, 양고기는 유럽, 냉동 쇠고기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 주로 수출된다. 2008년 동남아로의 수출 급증은 낙농품 수출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바. 수입

2007년 총 수입액은 전년대비 16.8% 증가한 US\$ 308억이며, '08년 1-7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US\$ 193.5억을 기록하고 있다. 2007년도 주요 수입국을 보면 호주가 US\$ 64억으로 1위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US\$ 41억), 미국(US\$ 30억), 일본(US\$ 29억)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 정제유 등 광물연료로 전체의 14.4%인 US\$ 44억이 수입됐으며 다음이 컴퓨터 등 기계류 제품(US\$39억), 자동차(US\$ 37억), 전기제품(US\$ 27억)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 1-7월 기간중 광물연료 수입액은 US\$ 35.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뉴질랜드 산업구조 및 특성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 낙농 국가로서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 28%가 삼림, 5%가 경작지,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은 1978년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목축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임업 등 1차 산업이 산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양고기, 소고기, 양모, 낙농 제품 및 가죽 등을 생산하여 국내 소비는 물론 해외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출 주종 품목을 이루고 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양과 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사슴, 염소, 타조, 라마 등의 사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원예작물도 수출품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의 증가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으며 굴, 홍합, 전복, 대형 새우 등을 양식하는 양식업도 유망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수출에서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GDP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보조금이 없으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타 국가의 제품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강한 농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정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농산품 및 수출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크게 축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수출 품목의 해외시장 수출기회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2008년 3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별 GDP구성은 1차 산업이 7.3%, 2차 산업이 21.64%, 3차 산업이 71.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by Industries(2007)

대분류	소분류	비중	
1차 산업	농업	5.17	7.30
	임업, 광업, 수산업	2.13	
2차 산업	제조업	14.88	21.64
	전기, 수도, 가스	1.91	
	건설업	4.85	
3차 산업	도매업	8.03	71.06
	소매업, 숙박, 요식업	8.06	
	교통, 통신업	10.71	
	금융, 보험, 사업중개업	26.96	
	재정 및 국방	4.60	
	개인 및 공동체 서비스	12.7	
합계		100.0	

자료: Key Statistics(뉴질랜드 통계청 2008.3월호)

나. 주요 경제 및 통화 정책

2004년까지 2%대를 유지해오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05년도에 3.0%, 2006년도 3.4%로 급등했으며 2007년도 2.4%로 다소 안정되기는 했으나, 2008년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4.1%라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부동산 거품 해소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2008년 초 8.2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으나, 주택담보 대출자를 압박 수위가 너무 높아 '08년 7월에 8.00%로 인하했으며, 추가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EIU는 뉴질랜드 중앙 은행이 2009년 말까지 6.7%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05/2006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 흑자가 US\$ 77억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OECD 최상위에 속하는 개인 소득세(19.5~39%) 및 법인세(33%)를 인하하라는 거센 압력을 받아 새 회계연도인 2008. 4. 1부터 법인세를 30%로 인하하였다.

정부 지출의 주요 관심분야는 교통, 의료/보건 및 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인세 인하를 감안하더라도 당분간 재정 흑자 상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주요 산업정책

주요 산업인 농업과 축산업 등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농림부((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로서 1998.3.1 부로 뉴질랜드 농업부와 임업부가 통합되어 새로 출범하였다. 주요 임무는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사람과 동물, 식물의 건강과 안전 및 자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뉴질랜드는 농업 등 1차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반면 제조업은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여, 중공업이나 경공업 등 제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생명공학, 정보 통신, 영화 분야 등 환경 훼손이 적고 자국의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국민당 시절에 관세인하 및 조기 철폐정책 추진으로 많은 빈약한 구조의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았다. Toyota, Ford, Honda, Mazda 등의 자동차 조립 공장도 자동차 수입 관세 철폐로 97년 이후 4개 공장이 모두 폐쇄되어 약 2만여 명의 실직자를 양산하기도 했으며, 유일한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Fisher & Paykel사도 2008년 하반기 중 공장시설 대부분을 태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냉장고 생산라인은 존치 예정)

라. 주요 산업동향

뉴질랜드 경제는 2001년 하반기부터 활력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말까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테러 등 관광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변수 속에서도 이민자 증가, 제조업과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호조를 바탕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이 4%를 넘어선 바 있다.

성장 동인은 수출부문에서 낙농제품, 육류, 목재 등 주력 수출품목이 10% 이상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으며 내수부문에서는 주택경기 활황에 따른 건설업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들어 이민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고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실질 경제 성장률이 2.8%로 내려 앉았으며 2006년 말에는 2.2%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내수경기의 활황 및 국제 낙농제품 시세의 급등에 따라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3.4%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마. 광물 및 에너지산업

뉴질랜드 에너지 산업은 뉴질랜드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8,000명의 고용 인력으로 총 고용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에너지 자급률은 70%에 달한다. 주요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보면 석유 48%, 전기 27%, 석탄 7%, 가스 8% 등이며 풍력 및 지열 등 재생 에너지가 기타 에너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생산은 30개 지역에 산재한 124개의 수력발전이 전력공급의 80%이상을 차지한 바 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4년 기준 64.7%로 떨어진 상태다. 수력발전은 지형 구조상 낙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남 섬에 집중적으로 80여 개의 댐이 있고 북섬에는 중부지역의 타우포와 와이카토 강에 편중되어 있다. 가장 큰 수력 발전소는 남섬의 MANAPOURI 발전소로 600MW급으로 연간 38억 8700만 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남섬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요가 많은 북 섬으로 공급된다.

화력 발전소는 9개 지역에 45개소가 가동 중이나 점차 쇠퇴일로에 있고, 지열 발전이 지속 증가하여 전력수요의 약 18%(2008년 기준)를 충당하고 있다. 지열 발전소는 북섬 중부 지역의 타우포, 로토루아 지역에 위치하며 가정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1958년 건설된 와이라케이 발전소와 1989년 건설된 OKAIE 발전소가 있다.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강수량에 따라 전력생산이 불균형을 이루기도 한다. 이에 따라 남섬의 수력생산 차질이 우려되어 2003년에 들어서 정부는 10%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 바 있으며 2003년 4월에는 전기료를 인상하여, 일반 가정은 물론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만성적인 전력 부족 사태로 인해 2004년 초부터 전력 회사들은 잇따라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였다.

전력 생산은 Meridian, Genesis, Mighty river power 등 3개 공기업(SOE)과 Contact, Trust Power 등 2개 민간기업이 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 산업동향

Commodity	2003.9	2004.9	2005. 9	2006. 9
Diesel Refined(천톤)	1,855	1,633	1,629	1,669
Petrol Refined(천톤)	1,505	1,570	1,605	1,534
Gas Production(terajoules)	206,831	163,654	163,157	160,452
Crude Petroleum(천톤)	972	790	777	719
Deliveries of Diesel(천톤)	2,188	2,248	2,329	2,364
Deliveries of Premium Petrol(천톤)	506	569	500	473
Deliveries of Regular Petrol(천톤)	1,806	1,846	1,877	1,898
Total Deliveries of Petrol(천톤)	2,312	2,415	2,376	2,371
Geothermal Energy Production	73,614	72,759	75,439	79,539
Electricity Generation(GWh)	37,184	39,310	39,273	39,920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석유는 북 섬 남서부 해안 돌출부에 소재한 타라나키에서 생산되며 전체 소비량의 46%를 공급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마우이 유전(82%)을 비롯한 6곳에서 생산되어 가정용, 석유화학 공장,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며, 일부 수출도 하고 있는데 NEW PLYMOUTH에 천연 가스 발전소가 있다.

금의 생산량은 연간 12톤(US\$ 25억)이며 해밀턴(5,387kg), 더니든(4,587kg) 및 그레이머스(2,157kg) 세 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은은 해밀턴에서 전량 생산되며 연간 27톤(US\$ 780만)이 생산되며 기타 석탄, 알루미늄 등도 함께 생산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에너지난에 대처하고 고갈이 예상되는 마우이 유전을 대체할 새로운 유전 개발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중반부터 뉴질랜드 최대 에너지 회사 Contact Energy와 정부기업인 Mighty River Power가 공동으로 NZ\$ 80백만을 투입, 시추 및 개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우리나라 현대하이스코도 남섬 남단의 심해저 원유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유전 매장량, 생산량

유전명	원유매장량	연간 생산량	천연가스매장량	생산량
Maui 유전	34.91Mm3	2.4Mm3	103,012Mm3	3,778Mm3
Kapuni유전	9.76Mm3	0.18Mm3	33,618Mm3	900Mm3
McKee유전	8.23Mm3	0.29Mm3	4,531Mm3	221Mm3
Waihapa유전	3.64Mm3	0.10Mm3	755Mm3	14Mm3
Kupe유전	2.59Mm3	-	7,476Mm3	-

주: Kupe유전은 새 유전으로 97년부터 가동

뉴질랜드는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광물자원은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가 생산된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할만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양이 충분하지 못하며, 여타 자원으로는 금, 철 성분의 모래, 점토, 골재 등이 일부 채굴되고 있는 정도이다.

석탄은 채굴가능 매장량이 86억 톤으로 최대 동력 자원이며 30%가 남 섬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석유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 액화가스, 합성석유, 원유 생산량은 뉴질랜드 소요량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으며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어 북 섬 왕가레이(Wangarei)에 있는 유일한 정유 공장 마르스덴 포인트(Marsden Point)에서 정제하여 사용하며 일부는 해외 수입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Taranaki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대의 탄화수소 자원이나 북섬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생산량의 절반이 합성석유 같은 석유화학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4분의 1은 전력 발전에 나머지는 상업 및 주거지역에 공급되고 있다.

개혁 및 개방화 정책의 시행으로 모든 부문의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정부의 규제나 간섭은 필요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데 대상은 자연적인 독점이 이루어지는 전기 가스 송배전 및 환경영향평가와 에너지 효율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 등을 들 수 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원관리법(The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을 통해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요 현안으로는 매년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생산의 확대문제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배출가스 규제로서 뉴질랜드는 교토협약 체결국으로 2008~2012년간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되는 입장이다.

바. 교통, 관광업

운송 부문은 뉴질랜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이는 뉴질랜드가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구불구불한 지형과 널리 분포된 인구 및 총 길이가 2,011km이나 되는 남북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

교통은 산업 혈액의 효율적인 구축 여부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으며 주요 교역국들과의 교역을 원활하게 지탱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뉴질랜드에는 항구와 공항으로 연결되는 약 93,000km의 통합 도로망과 4,200km의 철도가 건설되어 있다.

기간시설들은 많은 초기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관계로 대부분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건설되고 운영되었으나 8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거의 민영화되었다.

항공 부문에서도 1983년 이후 효율적인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86년 뉴질랜드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 법규가 사라져 뉴질랜드의 주요 3개 공항과 지방 공항들은 유한책임회사로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1998년에는 오클랜드, 웰링턴 국제 공항과 지방 공항의 민영화가 단행된 바 있다.

뉴질랜드의 철도 시스템은 인구 밀집지역과 3개의 inter-island rail ferry를 연결하고 있으며 90년 10월까지 정부기관인 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에 의해 운영되었다. 1993년 9월 핵심사업은 뉴질랜드 컨소시엄과 해외에 매각되었고 현재 Tranz Rail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뉴질랜드 대외교역의 약 90퍼센트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항구 물동량 처리는 30여 개의 외국계 회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1인당 항공기 및 파일럿의 보유 비율이 아주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서, 대형 항공기는 국제 및 국내의 화물과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며, 헬리콥터 같은 경비행기들은 농업, 관광 등에 활용되고 있다.

AIR NEW ZEALAND와 QANTAS를 포함한 총 29개의 국제항공사가 화물과 승객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선은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주요 지역을 운항하고 있다. Hamilton, Palmerston North, Queenstown and Dunedin 등은 타즈만 해의 횡단에 필요한 공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1.9.11 사태로 인해 Air New Zealand가 큰 재정위기를 맞게 되자 뉴질랜드 정부는 US\$ 8억 8,500만에 달하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82%를 공매하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항공사의 누적적자 심화와 국영 항공사로서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주식시장 상장 및 2003년 6월 US\$ 1억 5천만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재차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연간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관광산업은 뉴질랜드 주요 성장산업으로서 GDP 기여도가 직간접적으로 10%에 달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환경,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야외 레포츠 등이 뉴질랜드를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2007.4-2008.3월의 1년간 단기체류목적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한 방문객 수는 249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1%가 증가했다. 방문객의 국별 통계는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호주가 90만 3,000명으로 전체의 37.5%라는 압도적인 비중이며 다음 영국이 29만 5,000명으로 12.2%를 차지하며 한국은 11만 1,000명으로 4.6%로 미국, 일본에 이어 5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지역별 방문객 현황

(단위: 천 명, %)

국 가	2006. 12			2005			2004		
	방문객	순위	비중	방문객	순위	비중	방문객	순위	비중
호 주	903.5	1	37.5	874.7	1	37.0	855.9	1	36.7
영 국	294.8	2	12.2	306.8	2	13.0	283.7	2	12.2
미 국	225.6	3	9.4	214.5	3	9.1	218.3	3	9.4
일 본	136.4	4	5.7	154.9	4	6.5	165.0	4	7.1
한 국	111.4	5	4.6	112.0	5	4.7	113.9	5	4.9
중 국	105.7	6	4.4	87.9	6	3.7	84.4	6	3.6
독 일	59.4	7	2.5	57.5	7	2.4	55.7	7	2.4
캐나다	46.0	8	1.9	42.2	8	1.8	40.6	8	1.7
싱가포르	28.2	9	1.2	29.7	9	1.3	32.9	9	1.4
대 만	27.8	10	1.2	28.5	10	1.2	26.7	10	1.1
총 계	2,421.6		100	2,383.0		100	2,347.7		100
대양주	1,023.4		42.5	985.2		41.6	957.1		41.0
아시아	512.1		21.3	519.6		22.0	529.5		22.7
유 럽	508.8		21.1	513.3		21.7	481.2		20.6
미 주	295.2		12.3	276.2		11.7	276.2		11.8
기 타	69.5		2.9	71.3		3.0	90.2		3.9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사. 농림, 수산업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빈약한 반면 낙농업이 활발하며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98%는 협동조합이자 세계 5위의 낙농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폰테라 협동조합(Fonterra Cooperative Group)를 통해 수출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낙농업이 경쟁력이 있기도 하지만 주목할 것은 강력한 카르텔인 동 조합을 들 수 있다. 이 조합은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뉴질랜드의 가장 큰 2개의 유가공 업체와 뉴질랜드 낙농청 (New Zealand Dairy Board)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어 뉴질랜드 낙농제품의 대한 수출 통로가 되고 있는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제품 및 원료를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려 할 경우 이 기관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가격 및 물량 조절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다.

주요 낙농제품으로는 분유, 치즈, 버터, 식품 원료 등을 들 수 있으며 대규모 가공 시설과 결합한 효율적인 목축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많은 비용의 투자, 혁신적인 마케팅을 자랑하고 있다.

폰테라 협동조합은 매출이나 가공되는 우유의 양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유가공 업체로서 우유의 경우 95%를 수출한다.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비중은 전세계 유제품 교역량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 영향력이 막강하다.

뉴질랜드의 우유생산량은 연간 12억 kg 이상이며 젖소는 418만 마리(2007년 말)로 지난 10년 동안 30%나 증가했는데 11,500개의 낙농 농가의 평균 젖소 보유는 364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 육우는 1995년 6월 520만 마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441만 마리로, 양은 1980년대 후반 6,500만 마리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여 2007년 말 기준 3,856만 마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 Key Statistics 2008.5)

뉴질랜드가 생산한 우유의 약 98%는 폰테라 조합에서 취급되며 나머지는 Westland Dairy와 Tatura Foods가 차지하고 있음. 폰테라는 세계 120개국에 1만 7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40억 달러의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외에 염소 젖, 아이스크림, 치즈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수출업자들도 있으며 치즈는 분유, 버터 제품의 뒤를 잇는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3위 제품으로 생산량의 90%가 수출되고 있다.

Kapiti Cheeses 주식회사는 소규모 특산물 치즈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200개의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북 섬 남부에 위치한 공장에서 우유, 염소, 양젖으로 만든 치즈와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있고 치즈 대부분은 채식주의자와 Halal 인증(회교도들이 먹어도 된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 들이다.

유가공업계는 부수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는데 뉴질랜드를 유명한 아이스크림 시장의 본고장으로 성장시켰으며 오uckland의 팁톱(TipTop) 아이스크림 회사는 자사가 개발한 멤피스 멜트다운 아이스크림으로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고, 독특한 액화 질소 공정은 가운데가 부드럽고 끈적끈적한 두 겹의 초콜릿 껍질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염소 젖 또한 뉴질랜드의 수출 상품으로 인기가 있는데 북 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해밀턴 소재 Dairy Goat Co-Operation 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생아용 염소 가공유를 생산하고 있다. 5년 만에 7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로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대만을 중심으로 남미 및 중동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용 분유를 개발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국토의 52%가 목초지이자 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수량 등 이상적인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농업과 목축업, 원예산업이 발달해 왔으며 이들 부문은 뉴질랜드 경제 특히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슴, 염소, 타조 등 새로운 가축사육이 도입되고는 있으나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육류와 각종 낙농제품 생산을 위한 양과 소 위주의 축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농업제품 수출실적

(단위: US\$ 백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낙농품	2,427	2,787	3,336	3,664	4,071	5,585
육류	1,983	2,409	3,024	3,292	3,023	3,186
목재	1,177	1,213	1,391	1,348	1,385	1,539
과일, 너츠	515	575	893	827	762	954
어류	644	622	748	798	774	811
양모류	449	521	567	564	547	580
펄프	240	255	360	346	406	490
음료	197	243	348	429	494	689
기타식품	197	259	338	434	445	485

자료: World Trade Atlas 2008.9

1970년부터 원예농업도 수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뉴질랜드 농축산업의 강점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질랜드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는 자국의 농축산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GATT Uruguay Round Agriculture Agreement)가 이행되면서 농업보조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세계시장을 향한 진입 장벽 해소라며 반기고 있다.

농림부는 2006~2010년 전망(outlook)에 관한 보고서에서, 육류와 낙농제품 수출은 증가하고 양모 제품의 수출은 약간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2003년에 SARS와 미국-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양모 수요가 10%가량 감소한데다 관광 및 외식산업의 후퇴 등으로 육류 소비도 감소하여 뉴질랜드 주력품목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으나 2004년 들어 회복세로 돌아서고 가격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로 수출경쟁력을 잃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정도이며 13분기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산물 수출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키위과일의 수출감소와 더불어 금년들어 원예 작물과 사과 등 여타 제품들도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뉴질랜드의 수출 농작물은 밀, 보리, 콩, 옥수수, oat, nashi pears, berry fruit, 화훼, 양파와 야채 등이 망라되어 농가 소득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 수출통제품목(Producer Board Reform)

뉴질랜드에서 낙농품(dairy) 및 사과와 배 그리고 키위 등 3가지 품목의 수출은 생산농가 보호 및 소득창출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유지 등을 위해 지금까지 관련품목의 생산자 위원회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 왔다.

2006년 6월 기준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천 마리)

지역	양(Sheep)	젖소(Dairy Cattle)	고기소(Beef Cattle)	사슴(Deer)
Northland	526	378	491	9
15	127	122	148	15
Waikato	2,707	1,735	661	127
Bay of Plenty	382	301	117	60
Gisborne	1,834	N/A	305	28
Hawke's Bay	4,227	79	529	107
Taranaki	688	599	129	N/A
Manawatu-Wanganui	6,877	390	702	117
Wellington	2,012	103	176	23
Total North Island	19,547	3,715	3,259	491
Tasman	324	66	46	25
Nelson	N/A	N/A	3	N/A
Marlborough	649	26	68	16
West Coast	78	149	37	48
Canterbury	7,463	656	530	465
Otago	6,008	181	279	193
Southland	5,929	376	205	348
Chatham Islands	N/A	N/A	N/A	N/A
Total South Island	20,551	1,455	1,181	1,096
Total New Zealand	40,098	5,170	4,439	1,587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자. 임업

국토의 약 30%(810만 Ha)의 광활한 산림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이중 640만 Ha는 천연림, 170만 Ha는 조림지로 전체 목재의 95% 가량이 조림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목재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목재수입의 60% 이상을 뉴질랜드산 소나무(뉴송)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를 미국과 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 정보통신산업

뉴질랜드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한국과 비교할 경우 첨단 이미지보다는 내실 있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출시에 이르기까지 저비용의 첨단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산업전반이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사업 협력 능력을 경비하고 있다.

최근 낙후된 인터넷 통신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2007년 5월 텔레콤의 독점 구조를 깨고 통신망을 개방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빠르고 값싼 브로드밴드 도입을 위해 기업간 투자와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 배경에는 자국의 낙후된 인터넷 환경에 있는데, 뉴질랜드의 인터넷 보급률은 인구의 76.3%라는 비교적 높지만 초고속 인터넷인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6.9명으로 OECD 30국 중 22위로 하위에 있으며 이런 취약한 인터넷 환경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뉴질랜드의 통신환경은 국내외 통신 Gateway를 지원하는 대용량 광통신망과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어 투자를 위한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으며 지난 89년에 처음으로 통신시장을 개방한 이후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여 국영 Telecom New Zealand (한국 KT에 해당)이 1990년 8월에 민영화되어 유무선 통신업이 기업간 치열한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통신서비스는 메이저인 Telecom New Zealand를 비롯하여 Telstra Clear, Walker Wireless, Ihung 등이 한정된 시장을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거대 공룡인 Telecom New Zealand와 경쟁하기 위해 다른 통신 업체들은 통신망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3. 6. 20 Telecom New Zealand는 미국의 Lucent Technologies와 CDMA 무선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5년간 Lucent의 Worldwide 서비스 조직(Lucent Worldwide Services)을 통해 027 CDMA 무선망 설치는 물론 구축, 유지 보수 등 네트워크 관리 총괄책임을 맡겨 경쟁사보다 한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

한편 민영화 이후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해 현재 16개의 통신 서비스업체가 국내외 통신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은 Telecom New Zealand 와 Vodafone 등 2개 회사가 시장을 반분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Telstra Clear등이 일부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 인터넷 사용료는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비용인하와 함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OECD국가 중에서도 인구 대비(1,000명 당) 인터넷 호스트와 인구 백만 명당 secure server 보유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ICT 백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urvey)에 따르면 2006년도 뉴질랜드 ICT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규모는 총 NZ\$176억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IT산업은 통신 서비스가 42.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소프트웨어와 개인용 PC 시장 순으로 비중이 크며 특히 통신용 하드웨어의 판매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통신 시장과 IT 산업의 미래는 성숙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부의 예산 확충 등 공공부문의 프로젝트 활성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IT산업은 기업은 물론 가정과 학교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점진적인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나 적은 인구 규모와 높은 PC 보급률로 성숙 단계에 진입해 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큰 폭의 수요 증가보다는 IT 수요 증가와 대체 수요에 따른 완만한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동통신 시장은 Telecom New Zealand와 영국계 Vodafone이 양분하고 있는데 전 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전체 인구의 92%에 달하는 380만 명에 이르렀으며 최근 Vodafone이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여 이중 절반이 넘는 가입자 수 210만, 5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경쟁사이자 통신공룡인 Telecom New Zealand를 앞서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무역협정 체결 국가

뉴질랜드는 2008년 4월 중국과의 FTA 체결에 성공하였으며, 오는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아래 5개국과는 FTA에 이에 준하는 협정을 맺고 상호 경제협력 및 관세장벽 완화 등의 혜택을 공유하고 있다.

- 호주: Australia and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1983년 체결)
- 싱가포르: New Zealand and Singapor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1)
- 태국: New Zealand and Thai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5)
- 칠레: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2005)
- 브루나이: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2005)

나. 현재 자유무역 협상 중인 국가(협상 완료 국가 포함)

대상국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추진현황
태국	2004.3~20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제품을 포함 농림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협상 개시 ○ 쟁점사항으로는 뉴질랜드의 보호사업인 섬유, 의류, 신발 및 백색가전 분야 관세를 축소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태국 역시 농업분야에 대한 쿼터 및 관세를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 ○ 관세를 포함 비관세 장벽 철폐 역시 합의됨.
싱가포르	1999.9~200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와 맺은 가장 포괄적인 협약으로서 상품관세, 서비스, 투자 및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함.
호주	1983.1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무역 장벽 철폐에 관한 협약으로서 사실상 동일 경제권을 형성함.
GCC	200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말 기준, 주재국의 8번째 수출 대상지역임. ○ 낙농품 및 양고기를 중심으로 한 GCC 지역에 대한 수출 성장률은 전체 성장률 3.7%를 크게 상회하여 지난 6년간 평균 10%에 달함으로써 전략적 중요성 증가 ○ 협상분야는 관세,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진행 중임.
중국	2006.5~2008.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내용: 다항 참조
ASEAN	20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서비스, 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 진행 중임. ○ 주재국의 수출/수입 비중이 전체 5위에 이를 정도로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는 지역으로서 중요성 증가 ○ 지난 2000년 체결한 양국간 긴밀경제협약이 2004년 종료 되면서 이의 연장선상에서 협상 중임.
말레이시아	20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4월 6차 회담 이후 정체상태
한국	200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11월: 한-뉴 FTA 민간공동연구 완료 ○ 2008.4월: 양국대표 라운드 테이블 ○ 2008.9월/11월: 예비협의회 교환 개최 예정

자료: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및 무역관 자료 종합

다. 뉴-중국 FTA 주요내용

1) 협정의 의미: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뉴질랜드는 3년여에 걸친 15회의 협상을 통해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했으며, 2008년 4월 초 뉴질랜드 측에서는 총리를 포함 150여 명이 넘는 대규모 통상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 북경 인민회관에서 FTA 조인식을 가짐.
- 이번 협정안은 뉴질랜드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정식 발효되며 최대의 수혜 산업인 농수 축산분야 관련 기업들은 이를 계기로 대중국 수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

2) 뉴질랜드, 연간 NZ\$ 1억의 관세절감 효과

-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은 2007년 기준 US\$ 14억으로 2006년 대비 18.3%의 높은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호주, 미국, 일본에 이어 제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2004년부터 2006년 3년간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연평균 관세액 규모는 NZ\$ 1억1800만에 달했으나 이번 협정으로 인해 이 중 95%에 달하는 품목이 관세 철폐의 혜택을 보게 돼 연간 NZ\$ 1억1500만의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됨.
- 세부적으로는 전체 대중국 수출의 35%를 차지해온 관세율 5% 이하 적용상품에 대한 관세가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폐지되고 전체 수출품 중 6%를 차지하는 양모 제품에 대해서는 2009년 1월부터 관세가 사라지며 유아용 분유를 포함한 31%의 품목은 2012년부터, 대다수 낙농제품을 포함한 나머지 30% 역시 2016년부터 품목별로 점차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뉴질랜드-중국 관세철폐 일정 및 품목

관세 철폐 시기	뉴질랜드 수출		뉴질랜드 수입	
	수출 비중	주요 상품	수입비중	주요상품
2008년 10월	35.30%	fibreboard 일부, 어분, 구리 및 알루미늄 고철, 점결탄 및 철용재	38.60%	수입품의 37% 가 이미 무관세
2009년 1월	6.00%	양모 수출품 중 75% (8년에 걸쳐 관세 철폐 예정)		
2012년 1월 2013년 1월	31.20%	유아용 분유, 카세인, 요거트, 냉동 생선, 메탄올, 동물성 지방 및 기름, 사과, 와인	35.30%	철, 백색가전, 플라스틱류, 가구, 타이어, 필기구
2014년 1월			4.20%	섬유, 일부 의류, 신발 및 카펫
2016년 1월	4.60%	고기 내장(식용), 오렌지, 오렌지 주스, 집유기, 양고기, 쇠고기, 키위, 양가죽	21.50%	의류 및 신발
2017년 1월	2.50%	버터, 치즈, 우유		
2019년 1월	15.20%	전유 및 탈지유 가루		

자료: NZ 외무부

3) 서비스 산업, 인력 교류 및 투자 관련 비관세 장벽 철폐

- 관광, 유학, 건설 및 운송 분야 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양국 간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양국 간 해외법인 설립 시 일정 부분 이상을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 등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 인력교류와 관련된 협의사항으로는 양국 모두 임시입국 또는 임시 취업비자와 관련해 심사 소요일수를 10일 이내로 줄임으로써 신속한 입국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중국은 뉴질랜드인의 사업목적상 입국에 대한 투명한 비자 심사를 보장하고 체류 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6개월까지 연장함.
- 이에 대해 뉴질랜드는 교육, 환경, 컴퓨터, 사진 및 건설 분야 중국 숙련 기술인력들의 입국 기준 및 체류기간을 대폭 완화했는데 일정 자격요건 충족 시 최초 3년간의 고용이 허가되며 이후 필요가 인정되면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일부 분야에서 심각한 숙련기술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는 이와 관련된 중국인력들이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1000명 범위 내에서 3년간의 체류를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뉴질랜드 장기체류 기회를 보장함.
- 양국간 투자진출 관련 협의사항은 양국의 투자자들이 각 나라에서 국내 투자자들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 것과 최우선수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양국이 만약 제3국에 대해 해외투자 관련 특혜를 주었을 경우 자동으로 이와 동일한 특혜가 서로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함.

4) 시사점

- 중국 상품의 뉴질랜드 시장 장악 한층 가속할 듯
 - 2007년 기준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의 제2위 수입국(US\$ 38억)인 중국은 저개발국으로 분류돼 자유무역협정 전부터 정상관세율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비해 1~2% 가량의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 있었으며 협정의 체결로 인해 더욱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연간 US\$ 3억 이상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특히 2012년부터 관세가 모두 폐지되는 중국산 플라스틱류 및 철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수출액이 각각 US\$ 6000만, US\$ 5000만으로 전체 수출품 중 5, 6위를 차지 하는 품목이며, 연간 US\$ 1400만을 수출하고 있는 타이어의 경우도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뉴질랜드 낙농제품의 대 중국 수출 가속화로 인한 관련 제품 가격 급등 우려
 - 대 중국 수출품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낙농제품 수출은 2007년도에 전년 대비 16%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는데 이 같은 추세는 2012년 유아용 분유 및 요거트, 2019년까지 낙농제품 전 품목의 관세 철폐 등으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대뉴 주요 수입품목 중 목재, 원유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낙농 제품은 최근 국제시세의 급등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낙농제품 소비 급증으로 뉴질랜드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으로 장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와 별도로 중국인의 뉴질랜드 입국 및 취업기회, 투자 기회 역시 대폭 넓어지게 되어 양국간 인적교류 심화에 따른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구 420만 명에 불과한 뉴질랜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서방국가와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번 협정체결은 중국의 아시아 대양주 시장 지배력 강화의 첫 신호탄임.
- 따라서 한-뉴 자유무역협상은 이러한 중국의 아시아 대양주 지역 내 경제·외교 영향력 강화의 견제를 위해서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과제로 떠올랐음.
- 1999년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간에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꾸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해 진행된 민간합동 연구 결과, 양국 간 협정의 체결이 통상·투자 및 지식분야에 있어 두 나라 모두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결론이 내려짐.
-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뉴질랜드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이 끝난 지금 서둘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우선순위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음.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 확보와 식량자원 확보 그리고 미개발자원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활발한 투자진출을 위해 양국간 협상의 개시가 절실한 시점임.

라. 한-뉴 FTA 추진 필요성 및 추진현황

1) 한-뉴 FTA 추진 필요성

- 한-뉴 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
 - 우리의 대뉴 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 공산품이 주종이며, 대뉴 수입은 목재류, 육류, 축산가공품 등 1차 산품으로서 상호보완적 경제관계임.
- 한국과 뉴질랜드의 최적 농작물 재배시기는 정반대로서 농업피해 적음.
 - 뉴질랜드는 쌀 등 곡물 생산이 없고, 키위, 목축 등 오히려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가 많음.
 - 양국 농림부간 협력약정 기 체결. 우리 농림부도 적극적임.
- 08.4.7(월) 뉴-중 FTA 체결에 따른 뉴질랜드 시장에서의 우리 상품수출과 기업 진출 관련 상대적 열세에 대한 예방책 마련필요
-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IT 에 혜택
 - ※ 뉴질랜드 수입관세: 자동차(무관세), 핸드폰(7%)
- 뉴질랜드는 우리가 극빈국일 때부터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전통 우방 → FTA 를 통해 양국 관계 격상 필요
 - 한국전 참전(6,020명, 45명 전사) 및 콜롬보 플랜에 따라 64~87년 기간 약 300명의 한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을 교육 시킴.
 - 69~79년에는 평택 시범 낙농목장(Model Dairy and Beef Farms)을 설립, 우리나라 낙농업 발전에 기여

- 뉴질랜드 교민(32,000명, 전체인구 400만의 약 1%)에 직·간접 혜택
- 유사한 규모의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 모델로 삼을 수 있음. (뉴질랜드의 GDP 는 우리의 8분의 1 수준, 양국 간 연간 교역량 20억 미불)
 - 2008.4.7(월) 중국은 선진국 중 뉴질랜드와 최초로 FTA 체결
- 한-칠레 FTA, 한.미 FTA 및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뉴 측의 경제적 피해 우려 제기

2) 한-뉴 FTA 추진현황

- 한-뉴 FTA 민간 공동연구 완료(07.11.24)
 - 2006.12월 노무현 전대통령 방뉴 시 양국 정상간 민간공동연구 추진 합의
 - 노무현 전대통령은 “한국농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뉴질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민간 연구기관
 - * 한국 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 뉴 측: 뉴질랜드 경제연구소(NZIER: NZ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07.2.19 제1차 공동연구 개최(오클랜드) / '07.7.30~31 제2차 공동연구 개최(웰링턴)
 - 공동연구 결과를 양국 민간전문가와 정부인사가 참여하는 Round Table 에서 토의하여 이를 양국 통상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통상 및 투자 협력증진 방안 모색
- 한-뉴 FTA 라운드 테이블 개최 (08.4.21, 서울)
 - 양국 정부대표(국장급) 및 민간연구기관 관계자 참석
 - Simon Murdoch 외교차관 및 이해민 FTA 교섭대표 모두발언

3) 향후 추진계획

- 한-뉴 FTA 는 한-미 FTA 비준 발효, 한-EU FTA 협상타결 관련 국내 분위기 등을 보아 가며 사려 깊게 추진될 예정
-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인한 FTA 추진 여력 부족 및 농업분야 민감성 등 제반 상황으로 정부간 논의 개시에 어려움이 있으나, 한-뉴 관계의 장기적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 조속히 한-뉴 FTA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한 총체적 노력이 경주될 전망
 - 뉴-중국 FTA 체결(08.4.7)은 한.뉴 FTA 체결 추진에 모멘텀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
- 2008.5.16(금) 헬렌 클락 총리 방한 시 한-뉴 양국 정상 간 한-뉴 FTA 추진방안 협의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에 합의한 바, '08.9.29(월)~30(화) 기간 중 서울에서 한-뉴 FTA 예비 협의가 개최될 예정임.

III. 무역

1. 수출입 동향

가. 수출

□ 2007년도 수출은 US\$ 269억으로 20.1% 증가

- 주요 수출대상국은 호주,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한국 순이며, 동 6개국으로의 수출이 US\$ 151억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함. 2008년 1~3월 기간 중의 수출은 미국, 일본, 영국 등으로의 수출은 둔화세인 반면 인도네시아(81%), 싱가포르(89%), 중국(32%)등 동남아로의 수출은 급증세를 시현함.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약 20% 증가세를 기록 중임.
- 주요 수출품은 분유, 버터, 치즈 등 낙농 가공품(20%) > 육류(12%) > 목재(6%) > 기계류(5%) > 알루미늄(4%) > 과일(3.5%)의 순이며, 최근 원유생산 확대로 원유수출 급증이 주목됨.
- 우리나라와 동남아 등 동아시아 지역이 최대 시장으로 부상

□ 2008(1~7월) 수출은 US\$ 193.3억으로 전년대비 29.3%증가

- 주력 시장 중 호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43.1%, 26.6% 증가
 - 태국(111.7, 인니(61%), 말련(73%), 싱가포르(84%) 동남아 수출 급증
- 수출의 35%를 낙농품(21.4%), 육류(13.5%)가 차지
 - 낙농품 시장은 동남아, 중남미 및 일부 중동국가임
 - 육류는 영, 미로 30%를 수출, 한국비중은 4.5%(1.2억 달러) 내외
 - 목재류는 호주(1.6억), 일본, 한국(1.4억), 중국, 미국 순을 보임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국 및 품목

(단위: US\$ 백만, %)

국 가	'07	'08(1~7)		품 목	'07	'08(1~7)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26,958	19,332	29.3	총 계	26,958	19,332	29.3
호 주	5,928	4,300	43.1	낙농품	5,585	4,150	49.0
미 국	3,102	1,919	1.2	육 류	3,186	2,606	23.8
일 본	2,474	1,587	9.6	목재류	1,538	889	0.1
중 국	1,439	1,029	26.6	기계류	1,398	794	5.8
영 국	1,200	838	8.5	알루미늄	1,115	641	-0.6
한 국	977	660	14.4	광물연료	1,091	1,450	407.0
인도네시아	575	484	61.6	과일너츠	954	799	16.9
태 국	418	415	111.7	수산물	811	524	13.8
독 일	553	450	34.6	단백질류	777	493	15.4
싱가포르	509	428	84.8	전기제품	775	457	3.2

자료: World Trade Atlas/2008.9월

나. 수입

□ 2008(1~7월) 수입은 US\$ 193.5억으로 전년대비 22.7%증가

- 호(18.3%), 중(12.5%), 미(9.0%), 일(8.8%)이 수입시장 48.6% 점유
 - 호주: 원유, 연료유, 자동차, 기계류, 종이류, 의약품 등
 - 중국: PC류, 전자제품, 의류, 가구류, 신발, 철강제품
 - 미국: PC류, 항공기, 일본: 자동차, 연료유, 기계류 등
 - * 말련: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 - Bore/Sink M/C(HS843049)
- 고유가 영향으로 원유/정제유 수입이 급증
 - 원유(호, UAE, 사우디) 연료유(싱가포르, 호, 일)에서 주로 수입
 - 자동차는 금액상 일본, 독일, 호주가 38%, 13%, 10% 차지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국 및 품목

(단위: US\$ 백만, %)

국 가	'07	'08(1~7)		품 목	'07	'08(1~7)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30,893	19,346	22.7	총 계	30,893	19,346	22.7
호 주	6,369	3,541	5.8	광물연료	4,462	3,527	53.1
중 국	4,121	2,410	19.8	기계류	3,949	2,635	28.8
미 국	3,002	1,745	15.3	자동차	3,793	2,203	15.4
일 본	2,911	1,700	15.3	전기제품	2,746	1,579	13.6
싱가포르	1,586	1,012	23.6	플라스틱	1,148	661	14.9
독 일	1,443	812	9.9	광학/의료기기	837	531	20.8
한 국	875	442	-10.8	의약품	755	489	14.2
말레이시아	835	924	142.0	종이제품	729	419	12.2
태 국	823	550	33.3	항공기	629	334	- 4.3
영 국	798	437	5.2	철강제품	551	364	25.1

자료: World Trade Atlas/2008.9월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개 관

□ 양국 간 교역규모는 연간 약 US\$ 20억에 육박

- 2003년 US\$ 11억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규모가 5년간 배 가까이 성장하여 2008년에는 US\$ 2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양국 간 교역규모 변동 현황

(단위: US\$ 백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7)
대뉴 수출	432	620	670	673	699	492
대뉴 수입	708	879	891	967	1,171	699
교역 규모	1,140	1,499	1,561	1,640	1,870	1,191

자료: 한국무역통계 2008.9월

- 교역품목 구조는 우리는 농수산물을 주로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음.

나. 무역

1) 수출

□ 2007년도 수출은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 등이 주도함.

- 자동차와 산업기계를 포함한 기계류가 2007년 중 US\$ 2억으로 전체의 28.2% 차지하며 최대 수출 품목 군으로 부상
 - 다음으로 전자전기제품이 및 화학공업제품이 각각 US\$ 1.1억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 17.5%, 6.1%를 기록하며 2, 3위를 기록함.
- 2008년(1~7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7.3%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주력품목인 자동차, 무선전화기가 부진한 반면, 건설광산기계, 축전지, 타이어, 정밀화학제품이 신규 유망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음.

對 뉴 수출 주요 품목

(단위: US\$ 백만, %)

품 목	'07	'08(1~7)		품 목	'07	'08(1~7)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699.0	491.8	17.3	건/축전지	15.3	13.7	85.8
자동차	125.4	70.6	-11.8	철선/철관	13.2	7.2	4.7
무선통신기	72.7	27.3	-42.6	플라스틱제품	13.0	6.9	-5.2
어류	57.0	27.7	3.2	알루미늄	10.1	3.1	-50.4
건설광산기계	46.5	32.3	43.9	연체동물	9.7	7.8	-4.1
석유제품	44.9	113.0	155.6	영상기기	8.3	4.2	2.2
합성수지	44.6	24.7	-1.7	농산가공품	7.3	4.1	-0.9
철강판	43.5	23.4	-10.9	천연섬유사	7.2	3.0	-32.1
종이제품	25.2	14.6	1.3	정밀화학원료	6.8	5.7	96.6
기타석유화학	23.2	17.0	23.3	동제품	6.3	3.2	-16.6
고무제품	16.0	11.2	44.9	주단조품	6.1	2.7	29.8

자료: 한국무역통계 2008.9월 / MTI 3단위 기준

2) 수입

□ 2007년도 전체 수입의 70.8%(US\$ 8.3억)가 농림수산물임.

- 목재 및 낙농품이 각각 US\$ 4억, US\$ 1.7억을 차지했고, 광산물(US\$ 1.2억/원유)과 화학공업제품(US\$ 1.1억)을 포함할 경우, 총수입의 90%를 차지함.
 - 임산물 중 원목이 US\$ 3.8억으로 단일 품목으로 수입이 가장 많음.
- 축산물에선 쇠고기가 US\$ 1.6억으로 가장 크며 치즈를 중심으로 한 낙농품 수입이 US\$ 78백만을 기록함.
 - 2007년 우리나라 쇠고기 총수입 US\$ 10.4억 중 호주(US\$ 7.6억, 73%)에 이은 US\$ 1.6억으로 15.6% 차지
 - 치즈 총 수입 US\$ 1.8억 중 US\$ 47백만을 공급(26.4%)로 최대 공급국임. (미국 18.0%)

- 2008년 1~7월 중 수입은 7.6% 증가했음. 목재, 육류, 축산가공품이 총 수입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對 뉴 수입 주요 품목

(단위: US\$ 백만, %)

국 가	'07	'08(1~7)		품 목	'07	'08(1~7)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1,171.2	698.7	7.6	가죽	18.5	16.6	42.3
목재류	394.5	229.0	-3.0	기호식품	17.6	10.1	17.3
육류	177.6	131.3	6.5	종이제품	15.9	8.0	-8.4
축산가공품	122.3	119.1	67.5	수산가공품	14.3	7.7	-10.8
원유	107.8	-	-	산 식물	14.3	13.3	-2.4
곡실류	56.5	35.3	4.7	정전기기	10.9	7.0	32.7
제지원료	48.7	33.3	14.4	석유제품	7.8	-	-
기타화학제품	38.6	19.9	-21.3	동제품	5.6	1.0	-74.6
알루미늄	31.5	14.8	-21.2	해양구조물	3.8	3.7	13.0
합금철, 고철	22.1	14.5	33.7	식물성재료	3.4	1.7	14.0
축산부산물	18.5	7.6	-43.1	농약/의약품	3.1	2.0	42.5

자료: 한국무역통계 2008.9월 / MTI 3단위 기준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1) 수입 규제 개요

뉴질랜드는 농업과 축산업 및 임업 등 1차 산업 중심이라는 특징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여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해 주요 공산품의 수입 및 자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및 낙농 제품의 수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90년 이후 수입관세 일부 철폐 및 인하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인접국인 호주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태국, 칠레,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캐나다와는 이와 유사한 무역경제협력협정(TEC: Trade &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들 국가의 상당수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혹은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 규제를 하고 있으며 준거법률은 The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및 The Temporary Safeguard Authorities Act 1987 등이 있다.

2) 대한 수입규제 현황(2008년 9월 기준)

2001. 6. 10 한국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판정 이후, 2004. 7. 20 반덤핑 제소된 오일필터에 대해 2005. 1. 14 최종 덤핑 판정을 받았다.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기간(5년) 경과와 추가 제소가 없어 2006년 6월에 해제되었으며 오일필터는 현지 생산공장이 문을 닫음에 따라 2006년 12월 자로 규제 사유가 해소되어 반덤핑 규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산에 대한 덤핑규제는 해당 품목이 없다.

나. 2008년도 수입 규제 전망

2007년도 GDP 성장률이 3.4%로 추계(EIU)되는 가운데 2008년에는 성장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약 0.3%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12~18개월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경기 과열 및 원유가의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중앙은행의 경기 억제 정책에 따른 것이다.

'08년 9월 기준 8.00%에 이르는 중앙은행 기준금리 수준으로 인해 대부분 장기 주책 용자를 통해 집을 구입하는 현지의 특성상 이자부담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며 2009년 말까지 중앙은행 금리는 6.7%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05년까지만 해도 US\$ 25억을 넘던 무역적자가 원유생산 증가로 2008년부터는 US\$ 16억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바,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규제정책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못 되는 것으로 보인다.

1) 수입규제 예상품목

무역 자유화를 통해 자국의 이득이 크다는 점에서 수입규제가 특별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일부 현지 제조업체의 로비와 산업보호 차원에서의 규제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뉴 수출은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 및 기업과 이해 대립이 적은 관계로 하반기에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특히 탄소 배출 억제정책으로 인해 알루미늄 제련소, 현지 유일의 가전제품 제조공장 등이 중국, 태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할 예정으로, 한국산에 대한 경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 통상정책 방향

뉴질랜드는 주요 공산품의 수입과 농산물 수출을 위해 개방적인 경제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공산품 중 자국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수입관세율은 7%였으나, '08.7월부터 5%로 인하 조정하였다.

기존의 호주, 캐나다 이외에 2005년에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008년 4월에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였다. 조만간 우리나라와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다. 수입규제 현황

1)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건수(2008년 9월 기준)

품 목	국 가	유 형	개 시 일
Canned Peaches	South Africa	Dumping Review	2007. 5. 31

자료: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 수입규제 부과(조사) 현황(2001년 이후)

품 목	국 가	유 형	관 세	판정일
Oil Filter *	Indone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부과)	2006.04.29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5.11.15
Oral Liquid Paracetamol	Ireland	Dumping	Decision Pending	2005.03.30
Oil Filters	Korea, China, Indonesia, Thailand	Dumping	Current	2005.01.14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Imposed on Malaysia	2004.04.27
Reinforcing Steel Bar	Malaysia, Thailand	Dumping	Current	2004.03.25
Canned Peaches	Greece, EU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3.12.15
Portland Cement	Thailand	Dumping	Not Imposed	2003.11.30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Current	2003.07.14
Canned Peaches	EU	Subsidy Review	Current	2003.07.14
Hog Bristle Painbrushes	Chin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3.07.14
Glass Wool Insulation	Taiwan	Dumping	Not Imposed	2003.04.24
Hog Bristle Paintbrushes	China	Dumping Review	Current	2003.04.23
Galvanised Wire	South Africa	Dumping	Current	2002.12.21
Plasterboard	Thailand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2.12.04
Canned Peaches	South Afric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2.06.11
Hollow Gold Jewellery	Italy	Dumping	Not Imposed	2001.07.22
Washing Machine	Korea	Dumping	종료	2001.06.10
Refrigerator-Freezer	Korea	Dumping	종료	2001.06.10
Tamoxifen Citrate	UK	Dumping	Not Imposed	2001.02.21

주: *표의 오일필터 규제는 현지 제조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음.

자료: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라. 공산품 수입 무관세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아 대부분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폐지하였으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마. 협정체결에 따른 특혜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인 호주, 싱가포르, 태국, 칠레와 관세협정 체결 국가인 캐나다에 대해서는 무관세 혹은 저율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이외의 국가에게는 불리한 관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율 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품목이 많음으로 인해 협정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바, 향후 뉴질랜드와 FTA를 추진할 때에는 투자여건 개선, 검역 규정 상호인정 등 비관세혜택 극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저개발국 및 태평양 연안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GSP) 제도를 통해 일반 관세율보다 약간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줄곧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특혜관세(GSP)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04년 11월부터 일반관세 부과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소폭의 관세수해도 소멸되었다.

바. 유통구조

수입제품의 유통구조는 전문 수입상 -> 중간 도매상 -> 소매상 -> 최종 소비자의 전통적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수입 자유화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도매 또는 대형소매상이 직접 수입을 겸하면서 유통구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수요업체는 물론 현지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중간 유통업체 대신 직접 상대국 제조업체를 접촉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직접 수입에는 한계가 있어 아직도 전문 수입상의 역할이 크다.

대형 창고형 매장의 체인점들은 A/S문제, 인력최소화 등을 위해 수출업체와 직거래하는 것보다 중간 유통업자를 상대하려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범람하고 수입제품 간의 판매경쟁이 더욱 치열해 짐에 따라 직수입을 통한 박리다매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규모 수요업체들이 수출상의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는 점에 착안, 여러 곳에서 주문을 받아 수입한 후 다시 최종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수입 에이전트도 증가 추세다.

□ 유통구조 예시

- 국내 제조상품의 기본 유통구조
 - 제조업체(30%)----> 중간도매상(30%)----> 소매상(35%)----> 최종 소비자
 - 제조업체(50%)----> 소매상(30%) ----> 최종 소비자
- 수입상품의 기본 유통구조
 - 수입상(20%)----> 중간도매상(30%)----> 소매상(30%)----> 최종 소비자
 - 수입상(50%)----> 소매상(30%)----> 최종 소비자

* ()안은 단계별 평균 유통 마진율임.

사. 도매업 및 소매업 현황

도매업과 소매업은 '97년부터 시작된 국내경기 침체 및 높은 이자율 등에 따른 소비위축과 주요 유통망 간의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인해 이윤율 하락 및 판매량 정체 등 부진을 보인 바 있다. 소매업은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3-4년간 고전을 거

습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대 상업도시인 Auckland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다시 아시아 이민자의 급증과 주택가격의 상승 그리고 경제의 호전에 따른 소비활황 등에 힘입어 도·소매업은 큰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06년 성장도 2.7%에 이른 바 있다.

2007년 4/4분기의 도매시장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9.8% 증가했는데, 최대 품목인 자동차 판매가 12.1%, 전기전자제품 10.9%, 가정용품 14.0%의 증가를 보이면서 도매경기를 주도하였다.

아. 수입쿼터

뉴질랜드는 교역자유화를 주창하고 있어 수입쿼터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도 거의 없는 편이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분쟁사례는 많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우리 제품의 수입에 대해 규제한 바가 있다. 그러나, 2008.9월 기준 우리나라 산에 적용되는 수입규제는 없다.

가. 수입규제사례/ 자동차용 배터리(HS: 8507.10) 반덤핑 규제

- 규제기간: 1991년 12월 ~ 2000년 2월
- 관련기업: GNB Technologies (GNB) Century Batteries (NZ) Ltd
- 대상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 우리기업: Delkor Corp., Global & Yuasa Battery, Korea Storage Battery
- 조치경과
 - 1991년 4월 반덤핑 혐의로 피소
 - 1991년 6월 덤핑 조사 착수
 - 1991년 9월 예비 덤핑(40% 덤핑 마진율)
 - 1991년12월 덤핑 최종 판정(47~48% 덤핑 마진율)
 - 1994년 6월 반덤핑 세율 최고 20%로 하향 조정
 - 1999년 6월 재 검토
 - 1999년 8월 반덤핑 관세12~18% 부과
 - 2008.9월 기준 규제기간 만료로 반덤핑규제는 종료됨.

나. 수입규제사례/ 연마용 디스크(HS: 6804.22)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1995. 10 ~ 2000. 10. 16
- 관련 기업: Abrasives Manufacturing Ltd
- 규제 대상국: 한국, 대만
- 규제 대상 한국기업: Dongbo Grinding Wheel Co., Dongil Industries Co., Ltd
- 조치 경과
 - 1995.1월 피 제소
 - 1995.4월 반덤핑 조사 착수

- 1995.7월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 1995.10월 반덤핑 최종 판정 (덤핑관세 12-16%)
- 2000.10.17일 해제

다. 수입규제사례/ 냉장고(HS: 841810/21)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2001. 6. 10부터 5년간
- 관련 기업: Fisher & Paykel
- 규제 대상국: 한국
-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LG, 대우 등
- 조치경과
 - 2000.11월 피 제소
 - 2000.12월 반덤핑 조사착수
 - 2001.3월 덤핑 예비판정
 - 2001.3월 반덤핑 잠정관세부과 (25% - 71%)
 - 2001.6월 최종판정 (32%-55%)
 - 2006.6.11 해제

라. 수입규제사례/ 세탁기(HS: 845011)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2001. 6.10부터 5년간
- 관련 기업: Fisher & Pakel
- 규제 대상국: 한국
-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엘지, 대우 등
- 조치경과
 - 2000.11월 피 제소
 - 2000.12월 반덤핑 조사착수
 - 2001. 4월 덤핑 예비판정
 - 2001. 4월 반덤핑 잠정관세부과 (52% - 93%)
 - 2001. 6월 최종판정(52%-93%)
 - 2006.6.11 해제

마. 수입규제사례/ 오일필터 반덤핑 규제

- 조사 개시일: 2004.7.20
- 잠정 판정: 2004.10.28
- 조사 종료일: 2005.1.14
- 규제 기간: 2005.1.14 ~ 2010.1.14
- 2006년 12월 뉴질랜드 오일필터 생산 공장의 폐쇄로 인한 규제사유 상실로 해제

바. 수입규제사례/ 다이어리 반덤핑 규제

- 조사 개시일: 2007.3월
- 판정: 2007.8월
- WTO 반덤핑협약 제5.8항(미소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종료)에 의거, 한국, 홍콩, 인니 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종료

5. 관세제도

가. 대부분 무관세 수입

뉴질랜드 산업은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품목 예를 들어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및 관련 제품 등을 제외하고 수입이 자유롭고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7~20%대에 이르는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인 호주와 싱가포르 및 관세협정 체결 국가인 캐나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저개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GSP)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폭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은 2004년 개도국지위 상실)

수입품의 관세평가는 GATT의 관세 평가 규칙(Customs Valuation Code)에 따라 수입제품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다.

나. 추가 관세인하계획

뉴질랜드는 2003년 발표한 수입관세 인하계획에 의해 2006년부터 의류와 신발, 직물에 대한 관세의 대폭 인하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율은 지난 1999년 이후 6년간 동결되었던 의류, 신발 및 카펫 등에 대한 수입세율도 2006. 7. 1부터 인하되었으며 2009. 7. 1부터 10%로 인하될 예정임.

그 밖의 수입관세 부과대상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은 2008년 7월부터 5%로 인하되었으며 2009 년까지도 인하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의류부문에만 적용되던 종량세는 2005. 7. 1부터 종가세로 환원되었다.

수입관세 인하계획

기존관세율	관세인하 일정계획		
	2007.7.1	2008.7.1	2009.7.1
17	15	12.5	10
10	7.5	5	5
5-7.5	5-7.5	5	5

자료: 뉴질랜드 정부(www.beehive.govt.nz)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파악할 수 있다.

6. 주요인증제도

인구가 430만 명에 불과한 뉴질랜드는 환경과 사람 그리고 자연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로 엄격한 품질표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 및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뉴질랜드 표준(Standard)제도의 기본은 인체의 안전에 있으며, 공산품 전반에 걸친 표준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산하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ew Zealand)이다.

이 기관(www.standards.co.nz)을 접속해 관련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전화로도 쉽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서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며, 인증절차나 기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다.

관련 법규로는 표준법(Standards Act 1988)이 있는데, 이 법은 뉴질랜드에서 표준 사용의 촉진 및 장려를 권장하면서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 하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뉴질랜드는 품목별로 개별 법이나 규정으로 안전표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종의 Negative System으로 강제규정인 경우가 아니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규정이 많아 품목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표준을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Z)을 접속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표준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유아용 유모차 표준을 입수하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유료인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뉴질랜드 표준 중에서 특이한 것은 S마크 제도로서 이를 획득하는 경우 제품에 S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강제규정은 아니나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인 동시에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뉴질랜드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품의 표준준수 입증 책임이 수입업체에게 있음을 감안, 수출 초기부터 S마크 획득이 요구되는데, S마크는 품질 검사 전담기관인 Bureau Veritas(New Zealand) Ltd에서 실시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자체적인 시험검사를 거쳐 승인해주나 시험절차는 제품에 따라 상이하다.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소비자 보호부가 있고 모법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 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다소 모호하나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들 제품들도 호주와 유럽, 싱가포르, APEC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는 CER이라는 공동경제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품질규격 인증 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뉴질랜드나 호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규격인증을 받게 되면 양국 어느 곳에서건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 제품의 해당 사항이 많은 대표적인 품목은 식품과 전기전자 제품, 가스용품, 기계류, 의약품 등인데 주요 분야별로 규제법규 및 규제기관 등은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가 관할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농림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가 담당한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ACCP 시스템(the international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food safety system)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HACCP 시스템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정기 식품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전기전자 및 가스용품은 호주나 유럽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뉴질랜드에서도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 NZ)이나 소비자 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를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류, 크레인, 중장비 등은 이용자나 개인들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 산하 OSH(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가 제품 및 이용에 대한 안전을 규제하고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데 의약품이 안전, 품질, 효능 등에서 수용할만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며 제조, 저장, 유통과 관련된 사람, 장소, 관행 등이 의약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러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medicines) 및 의료기기(medical devices)와 관련된 법의 집행은 뉴질랜드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의 메드세이프(Medsafe)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표준을 인증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호주를 비롯, 유럽(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제품이 이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품목도 있고 자국의 개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표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안전표준과 관련, 뉴질랜드는 호주와 TTMRA(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라는 상호인증협정(1998.5.1부 발효)을, EU와는 NZ/EU MRA(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그리고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을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뉴질랜드 안전표준 관련기관

- Standards New Zealand
 - 주소: 155 The Terrace Private Bag 2439, Wellington
 - Website: <http://www.standards.co.nz>
 - 전화: 64-4)498 5990
 - 팩스: 64-4)498 5994
 - Email: snz@standards.co.nz

-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
 - 주소: Level 2, 25 Crowhurst Street, Newmarket, Auckland 1001
 - 전화: 64-9) 520-8790
 - 팩스: 64-9) 520-5229

(자료: 뉴질랜드 표준원(www.standards.co.nz), S마크 신청 및 승인기관 (www.bureauveritas.co.nz))

7.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인 뉴질랜드 지적재산권 등록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상표권(trade marks), 특허권(patents) 그리고 의장권(design) 등 3가지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을 비롯,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및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등이 있다.

뉴질랜드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적 구제가 우선인데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 및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에서는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는 물론 제품의 반환 등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NZ\$ 150,000(약 US\$ 10만)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에서도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이들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외에도 도매 및 소매 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 및 상표권과 의장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뉴질랜드 세관에 이들 제품의 반입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나. 특허권

1953년 제정되고 1982년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존속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6년(5년 또는 10년 연장 가능)이며 출원 공고는 3개월이다.

다. 상표권

1953년 제정되어 2002년 개정된 상표법은 서비스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으로 선사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5년 동안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등록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의장권

1953년 제정되어 1980년에 개정된 바 있으며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등록 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출원일로부터 15년(5년씩 2회 연장 가능) 존속이 가능하다.

8. 통관/운송

가. 통관제도

1)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 시행

- 국민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육류 및 식물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 및 엄격한 통제, 사후관리 등 질병 및 기생충에 대해서 박멸 및 봉쇄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농산물의 경우, 수입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검역규정이 마련된 배는 수입이 허용되나 다른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는 검사할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지난 2007년 말 포도, 참외, 인삼, 파프리카 등에 대해 검역규정 심사 요청서를 뉴질랜드 당국에 제출해 둔 상태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당국에 신청된 검역 규정마련 신청서가 산적해 있어 우리 농산품 관련 심사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

2) 일반 통관 절차

-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납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반출 이전에 관세, GST(부가가치세 12.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물품 인도증(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 모든 수입업자는 통관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 인터넷 페이지 www.cusweb.co.nz 또는 EDI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통해 반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추가로 송장, B/L, Packing List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물품은 GST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의 세율은 12.5%이며 산정기준가격은 세관신고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 또한 모든 수입되는 물품은 NZ\$25.38의 IETF(import Entry Transaction Fee)라 불리는 수입통관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농림수산부에서 부과하는 NZ\$3.38의 검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 수입통관서류 작성시 기입사항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사항으로는 통관종류, 입국항구, 상업송장번호, 운송수단, 수입일자(일/월/년), 물품상세내역 등이다.

3) 물품 검사

-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비율은 7.5~10% 수준이며 주로 파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4) 샘플통관

- 무관세 통관은 가격 기준으로 NZ\$ 1,000(약 US\$ 750) 까지만 허용되므로 비록 전시회 출품용 혹은 상담용 샘플도 송장 가격으로 NZ\$ 1,000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실제로 과거 시장개척단 방문 때 우리 업체의 샘플(모조 장신구)이 이러한 문제로 오클랜드 세관에서 통관지연이 발생한 바 있고, 송장가격을 기준으로 7%의 관세와 12.5%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였다.
- 따라서 간단한 샘플인 경우 송장가격을 NZ\$1,000미만으로 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Non-Commercial 로 신고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없애야 한다.
- 샘플 또는 임시반입 제품가격이 NZ\$1,000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ATA carnets(임시통관 요청서류/각국 상공회의소 발행)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 재 반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참고사항

-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공공기관의 행사(무역관 주관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경우는 해당 기관의 공문도 샘플통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완고한 검사 요원을 만나게 될 경우 원칙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 4항을 준수함이 요구된다.

나. 운송

1) 개요

- 뉴질랜드는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구불구불한 지형과 널리 분포된 인구 및 총 길이가 2,011km이나 되는 바, 운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약 93,000km의 통합 도로망과 4,200km의 철로가 가설되어 있다.
- 대외 교역은 약 90%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10%가 항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박운송의 경우 30여 개의 외국 회사가 맡고 있으며, 항만 관리, 운영도 이제는 거의 민영화되었다.

주요 항구별 수출 물동량 및 금액

(단위: US\$ 백만, %)

항구(지역)	점유율	금 액		
		2007	2006	증감
Auckland	22.58%	4,876,971	3,624,764	34.55%
Tauranga	19.58%	4,229,509	4,309,897	-1.87%
Dunedin	12.29%	2,654,119	1,943,979	36.53%
Christchurch	7.46%	1,611,287	1,445,267	11.49%
Napier	6.95%	1,500,821	1,171,917	28.07%
New Plymouth	6.66%	1,438,355	941,248	52.81%
Invercargill	3.32%	716,168	641,708	11.60%
Nelson	2.61%	564,523	441,662	27.82%
Timaru	2.54%	547,593	669,902	-18.26%
Wellington	2.39%	515,226	501,993	2.64%
Whangarei	0.75%	161,658	144,041	12.23%
Gisborne	0.35%	75,779	49,948	51.72%
Picton	0.09%	19,775	19,233	2.82%
Taharoa	0.03%	5,567	10,533	-47.15%
기 타	0.16%	35,125	0,205	16999.25%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 컨테이너 비용(40피트 컨테이너 기준, 2008년 9월 기준)

- 내륙 운송비: US\$ 200 (각 공단에서 인근 항구까지의 운송비)
- 해상 운송비: US\$ 2,700(오클랜드->인천 또는 부산)
 - 한국-> 뉴질랜드 해상운송비: 뉴질랜드-> 한국의 경우보다 물동량이 많음으로 인해 위 운송비보다 비싼 편임.
- 한국 -> 뉴질랜드간 운송 소요기간: 약 25일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1) 투자매력도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넓다. 원유를 비롯한 사철, 갈탄, 천연가스 등 일부 지하자원이 있으나 수출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60% 가량이 소고기 등 육류와 낙농제품 및 임산물에 의존하는 1차 산업 국가이자 선진 낙농국가이다.

인구가 430만 명에 불과하나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연간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국가이며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을 필두로 한 영화 등 문화산업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진흥을 위한 숙박시설의 신축, 확장 및 주요 관광시설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지인 고용, 국산화율, 송금, 재투자 및 수출 의무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투자장벽이 없다.

경기침체 타개와 주종 산업인 임업 및 관광부문 개발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인구수에 비해 도로, 항만, 교통통신 등 사회 기간시설이 비교적 발달해 있어 매우 좋은 투자환경을 갖고 있다.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뉴질랜드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보장되는 국가로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야, 수산 어획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을 하는 이외에는 규제가 없어 개방화 수준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및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 발표한 경제자유지수(IEF) 5위에 올랐고, 2006년도에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에 랭크(세계은행 발표) 된 바 있는 등, 창업 및 기업운영에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창업 소요기간, 행정 절차, 기업등록 비용, 고용과 해고, 투자자 보호에서 월등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규제는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을 뿐 아니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제조업이 진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투자진출 유의사항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으나 자국의 1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동 부문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외부에서 반입되는 소스(치어, 묘목, 육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건설부문의 투자증가와 개인 및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 주목을 끌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안고 있다.

4) 투자유치 정책 개황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를 일반부문과 민감부문에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민감부문은 해안 인접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및 수산 어획 등이 해당된다. 일반 부문의 경우 NZ\$ 1억(약 US\$ 7,500만) 이하 규모의 토지에 대한 투자도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며, 민감부문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허가 및 감독을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아시아 계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중국이 최대)들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매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활황에 따라 우리나라의 뉴질랜드 부동산개발 투자도 활발해 지고 있는데, 2003년에 진출한 한국의 대주개발은 오클랜드 도심 한 복판에 100 여 세대용 아파트 2동을 2005년과 2008년에 각각 성공리에 분양함으로써 한국형 아파트 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대주개발은 뉴질랜드에서 최고층 건물이 될 주상복합건물(부지면적 4,400s/m, 67층, 총 사업비 약 US\$ 5억)을 2009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5) 투자유치 관련 법규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해외 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OIO는 자국의 민감부문과 NZ\$ 1억 이상의 일반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을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다.

OIO가 심사한 외국인 투자관련 사항은 다음장인 “외국인 투자동향”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나. 사회간접자본

1) 전력산업

2008년 3월 기준 총 발전량은 39,485 GWh로 10년 전인 1999년 대비 15.6% 증가했으며, 수력과 풍력 발전이 22,333 GWh로 전체의 56.6%를 차지하고 지열발전을 포함한 화력 발전은 17,151 GWh로 43.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생산은 32%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Meridian Energy를 비롯 3개 국영기업(SOE)과 Contact Energy 등 2개의 민간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 40개의 발

전소가 전력을 전국적인 전력망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밖에 작은 규모의 발전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이용 또는 인근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 Meridian Energy(SOE) 32%: www.meridianenergy.co.nz
- Contact Energy 24%: www.contactenergy.co.nz
- Genesis Energy(SOE) 18%: www.genesisenergy.co.nz
- Mighty River Power(SOE) 14%: www.mightyriver.co.nz
- TrustPower 5%: www.trustpower.co.nz

최근 최대 발전원인 수력발전댐의 수위저하로 수력발전량이 평균치의 60%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는 10%절약을 위주로 한 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는 필라켄트를 사용하는 일반 전구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한편, 석면배출 문제로 2007년에 폐쇄했던 Contact Energy 화력발전소를 잠정 재가동 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 상하수도

물에 대한 수요량은 연간 20억 M3로 추정되는데, 가정용 2.1억, 산업용 2.6억, 축산용 3.5억, 농업관개용 11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인구의 87%가 공공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빗물 또는 지하수로 자체 공급하고 있다. 산업용은 33%가 상수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체 조달하고 있다.

자원 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따라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와 자원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그리고 각 지방정부(Council)에 오염방지 감독권이 주어져 산업용 폐수와 가정용 하수에 대한 감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 국제공항 및 항구

1) 국제 공항

뉴질랜드의 국제공항은 3대 도시이자 주요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244만 명의 외국인과 188만 명의 내국인이 이들 3개의 국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uckland 공항(www.auckland-airport.co.nz)은 국내외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의 취항이 집중되어 있는데, 86개 국제선 및 310개 국내선이 이륙하고 있다.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내에서 21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5분 가량 소요되며,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으로 청사가 구분되어 있다.

Wellington(www.wellington-airport.co.nz) 공항은 행정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선보다는 국내선 성격이 강하다. Christchurch(www.christchurch-airport.co.nz)공항은 남섬의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국제선 역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로는 대한항공이 지난 93년부터, 아시아나 항공이 2003. 10. 27부터 취항한 바 있으나, 승객 감소와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 등의 이유로 아시아나 항공은 2005년 3월 1

일부로 운항을 중단하였다. 2008년 9월 기준 대한항공은 고유가 및 비수기의 영향으로 취항편을 주 5회로 단축 중이나, 성수기에 접어들면 다시 주 7편 운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의 직항노선 국가

아르헨티나(Argentina)	일본(Japan)	대만(Taiwan)	쿡제도(Cook Islands)
칠레(Chile)	말련(Malaysia)	통가(Tonga)	영국(UK)
피지(Fiji)	니우에(Niue)	바누아투(Vanuatu)	인도네시아(Indonesia)
홍콩(Hong Kong)	싱가포르(Singapore)	호주(Australia)	한국(Korea)
서사모아(W.Samoa)	미국(USA)	타히티(Tahiti)	태국(Thailand)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		노포크 제도(Norfolk Island)	

자료: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현지 취항 주요 항공사

항공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Aerolineas Argentinas	www.aerolineas.com.ar	+64 9 379 3675
Air New Zealand	www.airnz.co.nz	+64 9 336 2400
Air Pacific	www.airpacific.com	+64 9 379 2404
Air Tahiti Nui	www.airtahitinui-usa.com	+64 9 308 3360
Air Vanuatu	www.airvanuatu.com	+64 9 367 2324
Aircalin	www.aircalin.nc	+64 9 308 3363
American Airlines	www.aa.com	+64 9 309 9159
Asiana Airlines	us.flyasiana.com	+64 9 256 6681
British Airways plc	www.britishairways.com	+64 9 306 5575
Cathay Pacific Airways	www.cathaypacific.com	+64 9 379 0861
Emirates	www.emirates.com	+64 9 377 6004
EVA Air	www.evaair.com	+64 9 358 8300
Freedom Air	www.freedomair.co.nz	0800 600 500
Garuda Indonesia	www.garuda-indonesia.com	+64 9 366 1862
Japan Airlines	www.jal.co.jp/en/	+64 9 379 9906
KLM & Northwest Airlines	www.klm.com	+64 9 309 1782
Korean Air	www.koreanair.com	+64 9 914 2000

자료: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2) 국제 항구

북섬의 Tauranga, Auckland, Napier, New Plymouth, 남 섬의 Christchurch, Dunedin, Nelson 등이 주요 항구이다. 수출 물량은 원목 및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북섬 동부의 Tauranga가 물동량 규모가 가장 많고, 다음이 남섬 Christchurch항이며, 이어 최대 도시인 Auckland, Napier 순으로 규모가 크다.

수입 물량은 오클랜드 북쪽에 위치한 Whangarei항이 가장 물동량이 많고 다음 Auckland, Tauranga, 등 북 섬 항구 순으로 수입 상품이 주로 북 섬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주요 항구별 수출 물동량 및 금액

(단위: US\$ 백만, %)

항구(지역)	점유율	금 액		
		2007	2006	증감
Auckland	22.58%	4,876,971	3,624,764	34.55%
Tauranga	19.58%	4,229,509	4,309,897	-1.87%
Dunedin	12.29%	2,654,119	1,943,979	36.53%
Christchurch	7.46%	1,611,287	1,445,267	11.49%
Napier	6.95%	1,500,821	1,171,917	28.07%
New Plymouth	6.66%	1,438,355	941,248	52.81%
Invercargill	3.32%	716,168	641,708	11.60%
Nelson	2.61%	564,523	441,662	27.82%
Timaru	2.54%	547,593	669,902	-18.26%
Wellington	2.39%	515,226	501,993	2.64%
Whangarei	0.75%	161,658	144,041	12.23%
Gisborne	0.35%	75,779	49,948	51.72%
Picton	0.09%	19,775	19,233	2.82%
Taharoa	0.03%	5,567	10,533	-47.15%
기 타	0.16%	35,125	0,205	16999.25%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라. 국가경쟁력/경제자유지수 및 신용등급

1) 2007년 국가경쟁력 19위 - 국제경영개발연구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뉴질랜드는 전체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19위를 차지, 2006년 21위에서 2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IMD의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관심 대상인 호주는 지난해 6위에서 12위로 6계단 떨어져 뉴질랜드와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미국이 1위를 차지한 반면 싱가포르를 지난해 2위인 홍콩을 한 계단 밀어내고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9위로 지난해보다 3계단 올라섰다.

뉴질랜드는 기업효율 18위 및 정부효율 6위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나 인프라 및 경제성 지표에서는 각각 23위 및 40위를 차지하여 전체 순위를 떨어뜨리게 했다. IMD는 뉴질랜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시했다.

□ 뉴질랜드의 역점과제

-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를 위한 법인세 구조의 변화
- 숙련된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정책 채택
- 충분한 에너지 및 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 도로 및 철도 건설에 대한 투자확대
- 노동 생산성 향상 및 기업 능력 개선

2) 기업환경(세계 16위)-영국 이코노미스트

2003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전문 연구기관인 EIU는 2003~2007년 기업활동 환경평가에서 뉴질랜드가 평가대상국 60개국 중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했다.

동 조사에서 1위는 캐나다가 차지했으며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7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홍콩(8위) 오스트레일리아(12위), 대만(17위)였으며 한국은 26위였고 중국은 38위에 머물렀다.

EIU는 5년에 한번씩 △사회간접자본시설 △대외무역 및 해외자본에 대한 개방도 △국제 테러에 대한 노출 등 10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업활동 환경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3) 기업하기 좋은 나라(세계 2위)-세계은행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2위로 선정되었다. 2006.9.6일 세계은행이 전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여건을 조사해 발표한 “2007년 기업활동(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뉴질랜드는 싱가포르에 이어 기업활동여건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홍콩, 덴마크, 영국, 일본 등이 잇고 있다.

5) 부패 없는 청렴국가(세계2위)-국제투명성기구

부패를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2006년 8월 발표한 2006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뉴질랜드는 핀란드, 아이슬란드와 함께 조사대상 146개국 중 공동 1위에 올라 부패 없는 국가, 투명한 국가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6) 뉴질랜드의 신용등급-피치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2003. 8. 18 뉴질랜드의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이후 변동되지 않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도 2003. 11. 27 뉴질랜드의 장기 외화 표시채권에 AA+, 자국통화표시채권에 A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 투자허가

1) 투자업무 담당기관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업무는 인베스트먼트 뉴질랜드가 담당하고 있다. 동 기관은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NZTE)의 산하기관으로 KOTRA와 거의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2) 투자 승인 및 신청서류

뉴질랜드 영주권 소지자 이외의 사람이 NZ\$ 1억 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설립하거나 뉴질랜드 회사의 25%이상의 주식을 매매하려 할 경우 그리고 5헥타르 이상의 부동산(땅,

섬, 해안이나 공원)을 구입하는 경우는 해외투자실(OIO)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류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해외투자위원회 또는 중앙은행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은 주로 신청회사의 경력, 사업계획 및 사업구조, 재정상태 및 자금 조달 계획, 뉴질랜드에 대한 기여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창출, 수지 균형, 미개발 자원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포인트로 알려지고 있다. 승인가간은 약 2~3주 소요되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실시하는 투자허가에 대한 공고를 통해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외국인 투자법 개정

뉴질랜드 정부는 2004.7.20 기존 외국인투자법(the Overseas Investment Act)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동 법의 개정도 투자제한 보다는 일부 보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외국인 투자위원회(OIC: Overseas Investment Commission)를 폐지하고 토지정보국(LINZ: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을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뉴질랜드의 주요 토지 매각조건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2003년 기스본(Gisborne) 근처의 Young Nick's Head 토지를 외국인들에게 매각할 당시 여론의 저항이 심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투자 누적 총액 NZ\$ 2,685억 규모

뉴질랜드 통계청이 밝힌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액은 2007년 말 기준 NZ\$ 2,685억으로 2006년 말의 NZ\$ 2,364억 보다 13.6% 증가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누적 총액은 NZ\$ 923.3억, 포트폴리오 투자 누적액은 NZ\$ 908.8억, 무역 신용장 개설, 대출 등 기타 투자 누적액은 NZ\$ 760.6억, 파생상품 투자액은 NZ\$ 93억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대뉴 투자액(누적치)

(단위: NZ\$ 백만)

구분		2006. 12월 말	2007. 12월 말
직접투자	Equity Capital	51,631	53,513
	Other Capital	38,124	38,814
포트폴리오 투자	Equity Securities	16,929	16,389
	Debt Securities	61,791	74,496
기타 투자	Trade Credits	1,874	1,675
	Loans	43,364	48,695
	Deposits	24,011	24,279
	Other Instruments	1,263	1,406
금융파생투자	Financial Derivatives	7,360	9,300
총계		246,347	268,567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Key Statistics 2008.5

뉴질랜드 통계청은 2007년 이후 외국인투자관련 총괄자료는 발표하고 있으나, 국별 통계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 아래 표는 지난 2006년까지의 국별 포트폴리오 투자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접국인 호주가 최대 투자국으로 총 투자액의 50.5%를 차지하여 양국의 경제 긴밀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순이며, 이들 4개국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71.7%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이 주요 투자국으로서 일본이 NZ\$ 16억 5,200만, 싱가포르가 NZ\$ 12억 6,300만, 그리고 홍콩이 NZ\$ 5억 8,500만이며 경제권별로 보면 선진국 그룹인 OECD 국가가 NZ\$ 624억 5,300만을 투자하여 80%를 차지했으며, ASEAN 국가는 NZ\$ 11억 5,100만에 1.5%를 차지하여 뉴질랜드에 대한 직접투자가 주로 서구 선진국들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 주고 있다.

주요 국가 및 경제권별 투자(누계) 현황

(단위: NZ\$ 백만)

국가 및 단체명	2002	2003	2004	2005	2006
OECD	42,273	41,872	51,245	58,768	62,453
APEC	30,403	34,034	44,888	51,614	56,067
EU	11,283	12,722	10,537	11,641	10,826
ASEAN	1,227	961	1,082	1,165	1,151
호 주	17,816	21,189	29,668	34,245	39,395
미 국	8,873	5,967	7,714	9,239	8,795
영 국	5,892	6,371	5,033	4,439	3,909
네덜란드	3,891	3,738	3,508	4,244	3,848
일 본	1,191	1,292	1,532	1,700	1,652
독 일	(C)	(C)	1,194	1,343	1,593
싱가포르	1,225	986	1,226	1,254	1,263
캐나다	458	792	889	1,100	1,044
홍 콩	738	772	757	778	585
스위스	174	190	161	114	52
전체	56,034	58,296	68,928	73,374	78,072

주: 해당연도 3월 말 기준, (C)는 Confidential로 공개되지 않음.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of New Zealand)

나. 전력, 가스 공급 및 농업, 부동산, 금융 부문 투자 높아

뉴질랜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나 외환거래에 규제를 하지 않아 정부기관의 특별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NZ\$ 1억 이상 투자나 특별한 토지 구입 등의 경우에는 토지정보부(Land Information NZ)내 해외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래 표는 2001~2005년 기간 중 산업별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 외국인투자 현황(2001~2005)

(단위: NZ\$ 백만)

업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05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제조업	28	146	12	164	9	647	10	586	10	432	69	1,975
전력/가스/수도	4	37	2	-0.1	2	39	3	1,746	2	0.9	13	1,823
농업	119	791	107	336	69	135	45	86	60	130	400	1,478
부동산서비스	8	-181	28	209	30	114	29	548	39	454	134	1,144
금융/보험	6	47	4	9	6	35	1	68	4	555	21	714
보건	-	-	1	0	-	-	2	108	8	594	11	702
문화/레저	13	-28	10	13	3	6	5	-35	3	473	34	428
임업	59	30	51	-412	40	384	26	266	24	159	200	427
운송/창고	3	19	3	5	3	155	4	116	4	6	17	300
도소매업	6	19	4	-1	4	0	3	139	8	34	25	191
광업	6	5	18	4	36	38	8	87	5	8	73	141
통신서비스	4	0	3	22	4	58	1	51	-	-	12	131
주거부동산	18	11	24	14	24	16	28	13	20	10	114	65
숙박업	13	5	8	11	8	14	10	-4	12	11	51	38
수산업	1	23	1	0.4	-	-	-	-	-	-	2	24
건설업	2	4	-	-	-	-	1	0	4	6	7	10
교육서비스	-	-	3	0.7	-	-	2	2	-	-	5	3
기타			1	0	-	-	-	-	-	-	1	0.1
계		928		375		1,641		3,777		2,873		9,594

자료: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ffice)

아래 표는 2007년 1월 이후 2008년 5월 말까지 OIO 가 심사, 승인한 외국인 투자진출 신청서 중 투자금액이 NZ\$ 1,000만(약 US\$ 750만) 이상인 건 112건을 산업별로 나누고 있다.

아래의 통계를 보면, 부동산 개발관련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제조업 투자는 2008년 5개월 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축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농·축산업분야 투자는 주로 100만~700만 달러 정도의 중소규모 투자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래 표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정보원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사이트 초기 화면 에서 Overseas Investment > Decisions, Statistics & News > Decisions Summaries Released 편을 차례로 찾아가면 월별·건별 투자승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투자실은 승인된 외국인투자의 국가별, 산업별, 지역별 세부 현황을 2005년 말까지는 집계 발표했으나, 2006년부터 이를 중단하고, 대신에 2006년 11월부터 매월 승인된 건수 및 금액, 그리고 주요 프로젝트 내용만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해외투자실(OIO)의 투자심사 승인건수(산업별)

분야	2007년	2008년 1~5월	합계
부동산 개발	30	3	33
농업	3	2	5
축산업	5	2	7
광업	4	2	6
조림 및 목재가공	4	1	5
제조업	13	0	13
의료, 건강	4	4	8
관광, 숙박	3	1	4
물류, 유통	8	2	10
금융	4	1	5
방송, 통신	5	1	6
기타	7	3	9
합계	90	22	112

자료: 뉴질랜드 국토정보원(www.linz.govt.nz)

다. 북 섬의 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 가장 많아

외국인 투자의 지역별 분포는 북 섬과 남 섬에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상공업 중심지인 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가장 활발하고 다음이 북 섬의 동북부 지역인 베이오브플렌티로 알려지고 있다.

남 섬에서는 북단에 위치한 벨슨과 크라이스트처치를 포함하고 있는 캔터베리 지역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 주요 외국 투자기업(2006년~2007년 1분기)

투자기업	국적	투자 및 인수 대상	투자금액(NZ\$)	지역
CDL	싱가포르	랑데부 호텔	1억 1,000만	오클랜드
CAID Pty	기업연합(미국, 영국, 싱가포르)	토지 매입	2억	남북섬 각 지역
Nikko Investment	기업연합(미국, 일본, 캐나다)	Hire Equip	1억 7,000만	오클랜드
Suncorp	호주	Promina Group	89억 4,000만	오클랜드
Pepsi	미국	Bluebird Foods	2억 5,000만	오클랜드
Sirius Finance	기업연합(미국, 호주)	Blue Star Print Group	1억 7,000만	오클랜드
Alico HIT	호주	Strategic Investment Group	2억 2,000만	오클랜드

자료: 해외투자실 (Overseas Investment Office)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나라의 기업형 직접투자는 시작 단계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투자는 80년대 이전의 기록을 갖고 있지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인데 2008년 6월말 기준 우리의 투자는 신고기준 409건에 US\$ 2억 9,644만이나 실제 투자는 244개사에 US\$ 1억 6,313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라기보다는 이민 진출의 확대에 따른 이민형, 생활형 투자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 기업당 투자액은 평균 US\$ 66만 6,000에 불과한 소규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 투자는 2000년 초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문호를 개방, 현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의향서만 제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장기 사업자 비자 정책을 채택하면서 크게 증가했는데 2000년 이후의 투자가가 219건에 US\$ 1억 3,900만으로 전체 건수와 금액의 각각 88.6%, 87.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민형 투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등 부문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1993년에 한솔이 조림사업, 1996년에 오뚜기식품이 원재료 가공공장, 2003년 대주건설이 부동산 개발사업, 2008년에는 현대 하이스코가 오일탐사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등 기업형 투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대 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US\$ 천)

연도	신고건수(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62-90	4	1,680	7	1,601
1991	1	4,949	1	44
1992	3	1,000	9	3,797
1993	0	0	5	280
1994	2	1,700	5	361
1995	4	5,326	8	2,025
1996	6	10,465	12	5,875
1997	5	70,889	17	2,952
1998	1	288	4	1,570
1999	1	356	6	417
2000	25	5,306	38	4,346
2001	55	14,780	81	7,893
2002	51	28,467	130	14,024
2003	31	33,356	89	33,853
2004	12	24,268	58	16,691
2005	10	24,169	47	24,973
2006	9	21,544	41	4,221
2007	16	38,213	61	32,114
2008(1-6)	8	9,686	22	6,093
Total	244	296,441	641	163,129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나. 우리나라는 조림업, 식품가공, 부동산 개발, 원유탐사 등에 주로 투자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초기에는 현지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한 임업, 식품 분야에의 투자가 두드러졌는데, 2003년 이후 부동산개발이나 원유탐사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림분야의 경우, 뉴질랜드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 역시 풍부하여 나무가 비교적 빨리 자라는 환경을 활용한 성공적 투자 프로젝트로 평가 받고 있는데 2006년에는 우리나라의 목재 관련 기업이 제 3국을 통하여 약 NZ\$ 5,500만 규모의 현지 미국계 MDF 제조기업을 인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 붐이 일면서 부동산 투자가 새로운 분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직장인과 유학생 등을 위한 도심지역의 중소형 위주 아파트 수요증가가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5년에 우리나라 중견 건설업체가 오클랜드 시내 2개 처에 토지를 직접 구입, 아파트를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으며, 현재 시내 중심 요지에 토지를 구입하고 67층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건설을 계획하는 등 주택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08년에는 현대 하이스코가 남섬 남부 심해저 원유탐사계획에 투자함으로써, 자원개발 투자도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07년 말 기준 산업별 투자에 있어 건수로는 숙박 음식업이 70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 59건의 도소매업, 34건의 서비스업, 26건의 제조업, 19건의 농림어업 순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대 뉴질랜드 투자 현황(2007년 말 기준)

(단위: 건, US\$ 천)

산업별	투자건수	투자기업 수	총 투자금액
농업, 임업	84	12	38,129
어업	18	7	5,156
제조업	71	26	11,262
건설업	62	10	30,410
도소매업	107	59	13,228
숙박, 음식업	144	70	15,319
운수업	14	8	4,786
통신업	-	-	-
부동산/임대업	23	10	23,333
사업/서비스업	4	3	138
교육서비스업	14	3	1,614
보건/사회복지	1	1	141
오락/문화/운동	39	8	11,581
기타개인서비스업	38	19	1,940
총계	619	236	157,036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지역별 투자 분포에 대한 세부 자료는 없으나 대부분의 투자가 뉴질랜드 내 최대의 도시 이자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있는 북 섬의 오클랜드와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분야에 따라서 주된 진출지역에 차이가 있는데 조림산업은 북섬 동부의 기스본 지역에, 수산업은 남 섬 동부의 티마루, 더니든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주요 투자기업 현황(2008.6월 기준)

(단위: US\$ 천)

현지 법인명	업종/품목	신고액	투자액	인가연도
Daeju Housing Ltd	건 설	31,744	24,980	2002
Hansol NZ Ltd	농림어업(조림)	91,107	25,900	1993
Daeju Global Management Ltd	부동산업	10,678	10,687	2002
HH Development NZ	부동산업	10,689	10,319	2005
Prime Resources Co.	농림어업(목재)	8,064	8,064	2003
Australian Land Development Ltd	서비스업	16,744	8,577	2006
Ottogi NZ	식품가공	4,600	4,600	1996
NZ Taranaki Basin Exploration	원유탐사	4,500	2,250	2008
Stavefield Holdings	농림어업	4,875	3,527	1991
KIWI Steel NZ	철강무역	3,711	2,614	1996
Neo Farm Co.*		12,080	2,699	
Agence Maritime Holdings Ltd.*		2,443	2,429	
DK NZ Forestry Ltd	원목무역	4,000	2,000	1995
Christchurch Golf Resort Ltd	레저산업	2,062	2,050	2004
HM E&C NZ Ltd	건 설	2,000	1,738	2003
Winstoonds Samsung Ind. Ltd.*		1,400	1,348	
J.K. Development Ltd.*		1,769	1,294	
Traveller Int'l Motel Inc.	숙박업	2,400	1,265	2003
Dae Hyun NZ	수산업	1,141	1,141	1995
Bundy Tubing NZ Ltd.		1,000	999	

주: 표의 세부내역은 하반기 중 보완 예정임을 양지 바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다. 뉴질랜드의 대한 투자는 US\$ 3,804만 수준

뉴질랜드의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 못하며 2007년 말 기준 식품 제조, 전기 및 전자, 도.소매업 등의 분야에서 총 56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금액 기준으로도 대한 투자는 US\$ 38,044천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양국간 교역규모와 경제여건에도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이 부재한 뉴질랜드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연도별 대한투자 현황

(단위: US\$ 천, %)

구분	'62-'99	2000-'04	2005	2006	2007	총계
건수	24	21	10	3	5	63
금액	17,884	17,854	1,669	168	471	38,044

자료: 한국 지식경제부(2008.4월)

기업별 투자현황을 보면 NZ Trading Board가 한국의 매일 치즈와 치즈제조업, Fielding Nominess NZ가 화신 전선과 전기제조업, WS Asia Pacific Holdings가 CWS 코리아와 무역업 등에 투자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대한투자 주요기업 현황

(단위: US\$ 천)

연번	현지법인명(투자자명)	인가월	투자금액	사업명(업종)
1	매일 뉴질랜드 치즈(주)	89.9	8,922	치즈제조(식품)
2	메타넥스코 뉴질랜드	99.8	3,031	도·소매업
3	하이 트론씨(주)	96.4	1,624	전기·전자
4	지원산업(주)	89.12	1,477	전기·전자
5	화신 전선	89.3	743	전기·전자
6	International Development Corp.	93.4	380	무역업
7	한국금속기와(주)	95.4	245	금속판제품제조
8	한생 식품	89.7	138	무역업
9	서울 아쿠어리 21	99.3	40	사설시설운영

자료: 재정기획부 해외투자통계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유치 정책 개황

-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특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민감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과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나. 투자 유치 관련 법규

□ 해외투자법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에 관한 관할 법이다. 이 법에 의해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해외투자법의 세부내용은 해외투자실 홈페이지 www.oio.linz.govt.nz 에서 Publication 항목에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 해외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

- 토지관련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 토지 총 면적 5헥타르 초과 시
 - 토지 총 면적 4,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크기와 상관 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총 면적이 4,000 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공공위락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유산 또는 역사보존 지역인 경우
-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 면적이 2,000 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
- 주식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 총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 주식 매입 금액이 NZ\$ 1 억을 초과하는 경우
 - 회사 발행주식 감정가 총액이 NZ\$ 1 억을 초과하는 경우
 - 투자 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액이 NZ\$ 1 억을 초과하는 경우
- 자산 및 사업체 투자 시 투자 규모가 NZ\$ 1 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외투자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 토지 투자 승인 절차 (승인 필요 시)

□ 승인신청서 작성 요령

- 별도의 승인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의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
 - The Manager
 - Overseas Investment Office
 -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 Private Box 5501
 - Wellington
 - Fax: + 64 4 460 0111
 - Email: oiio@linz.govt.nz
-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신청인 (Applic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경력 또는 해외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 (In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 방법
토지 (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면적(헥터 또는 평방미터) ○ 법적 명세서 ○ 1 개월 이내 등기부 ○ 주소 및 지역을 포함한 위치 ○ 주변 지도 ○ 토지소유권의 종류 ○ 매입 후 분할 예정인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 NZ\$8,200 불이며 최고 NZ\$21,800 불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 주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라. 토지를 제외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

□ 승인신청서 작성 요령

- 별도의 승인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의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
 - The Manager
 - Overseas Investment Office
 -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 Private Box 5501
 - Wellington
 - Fax: + 64 4 460 0111
 - Email: oiio@linz.govt.nz
-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 및 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신청인 (Applic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경력 또는 해외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 (In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에 대한 설명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 NZ\$ 2,100 이며 최고 NZ\$ 5,300 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 주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마. 투자기업이 가지는 의무

□ 현지법인

- 회계자료의 제출: 재무보고법(1993)에 의거, 재무재표가 완료된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회사등기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례보고서(Annual Return) 제출: 등록을 한 첫 해를 제외하고 모든 법인(지사 포함)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회사등기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현지법인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 현지법인의 서류 송달 주소
 - 주식 자본금 요약
 - 이사들의 인적사항
 - 과거/현재의 이사 명단
 - 최종 연차총회일
-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제출: 현지법인은 연례보고서 외에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함. 연차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후 5 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필히 포함해야 함. 또한 연차총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 재무제표 사본
 - 이사 보고서
 - 감사보고(필요 시)
 - 이사들의 인적사항
 - 연 수입이 NZ\$ 10 만을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 기타: 세금, 연회비 납부, 회사명이 기재된 공식 문서 사용 등

□ 지사

- 위 현지법인의 제출서류 중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동일하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진출 개요

- 외국법인(overseas company) 또는 개인이 뉴질랜드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이 규정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에 한정되고 있음.
 - 뉴질랜드 내 현지법인(자회사 포함) 등록(회사법 2장)
 - 뉴질랜드 내 지사 등록(회사법 18장)
 - 기존 외국법인의 뉴질랜드 법인으로의 변경 및 등록(회사법 2장)
- 뉴질랜드는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투자진출을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절차도 비교적 간단함.

나. 현지법인 설립 절차

- 회사명 승인신청: 회사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에 지정된 양식에 의거, 회사명(이하, 상호명) 승인을 받아야 함
 - 기 설립 여타 회사와 상호명이 (거의)같거나, 혐오감을 줄 경우에는 거절됨
 -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한 승인신청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NZ\$ 25 임.

- 상호명 승인을 득하면 20영업일 내에 회사등기소에 NZ\$ 100의 수수료와 함께 아래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인설립은 완료됨.
 - 상호명 승인서
 - 등록신청서(신청인 인적사항, 이사들의 인적사항, 주주별 소유주식의 수, 주사무소의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주 및 이사 동의서(지정된 양식을 사용)
 - 이사확인서(모든 이사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함)
 - 회사정관(의무사항은 아니며, 미제출시 회사법이 정한 표준정관을 준용하는 것으로 봄)

- 회사등기소장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회사설립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함. 이 때부터 회사명의로 영업이 가능하나, 부가가치세(GST), 법인세 및 현지직원 급여 원천공제 등을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번호를 발급 받아야 함.

- 납세자번호(IRD Number) 신청:
 - 회사등기소에 법인등록 신청 시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IRD 홈페이지(www.ird.govt.nz)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 지역 세무서에 발송하면, 처리 후 납세번호를 통보 받게 됨.

- 설립 후 의무사항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주주(주식의 25% 이상 소유)가 외국의 모기업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후 재무제표를 회사등기소에 결산일로부터 5개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연례보고서(Annual Return) 제출 의무: 등록 첫해를 제외하고 모든 법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회사등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현지법인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 현지법인의 서류송달 주소
 - 주식자본금 요약
 - 이사들의 인적사항
 - 과거/현재의 이사 명단
 - 최종 연차총회일
 -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제출의무: 현지법인은 연례보고서 외에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하여야 하는데 연차 보고서는 회계마감일 후 5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함.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재무제표 사본
 - 이사보고서
 - 감사보고서(필요 시)
 - 이사들의 인적사항
 - 연간 수입이 NZ\$10만 불을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다. 지사설립 절차

- 지사라 함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기업(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의 현지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존재를 말하며, 현지법인 설립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사명 승인신청: 지사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상호명 승인을 득하면 10영업일 내에 회사등기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등록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또는 첨부)되어야 함.
 - 모기업 명칭, 모기업 주주들의 이름과 자택주소
 - 뉴질랜드 내 주사무소의 주소, 모기업의 권한 수임자 1명 이상의 이름과 주소
 - 상호명 승인서
 - 뉴질랜드가 아닌 제3국에서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외국에서의 등록서류, 정관이나 정관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회사등기소장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사설립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 때부터 지사명의로 영업이 가능함.
- 국세청의 납세자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현지법인과 동일 함.
- 설립 후 외국기업의 지사도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등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본사의 영문 재무제표 (한글재무제표일 경우 공증번역된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연례보고서 (Annual Return) 제출의무: 등록 첫해를 제외하고 모든 법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회사등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사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및 서류 송달 주소
 - 주식자본금 요약
 - 이사들의 인적 사항
 - 과거/현재의 이사 명단
 - 최종 연차총회일
- 모기업에 관한 변경사항 및 제출한 보고서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등기소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라. 등록처 및 소요비용

- 등록처: the Companies Office National Processing Center, Private Bag 92061, Auckland Mail Center, New Zealand
- 등록신청방법: 우편, 팩스는 물론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함.
 - 웹사이트: www.companies.govt.nz
 - 팩스: (64-9)912-7787

마. 공장설립 절차

- 공장건설은 Resource Management Act(1991/RMA)를 준거법으로 하며, 건설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역 City Council(시청 또는 지역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RMA 법은 세법과 더불어 가장 방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적용이 까다로운 바, 세밀한 주의가 요망됨.

- City Council 로부터 공장건축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서 작성과 함께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며, 주변 주민으로부터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환경평가 대상
 -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소음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 연소물질 배출 및 냄새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 상하수도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지역 문화유산 등에 주는 영향
- 이 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이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여 사전 공청회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공청회를 갖게 될 경우 소집절차 등의 이행으로 인해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는 15일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음

바. 기타 사항

- 뉴질랜드에서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한 경우 국세청(Inland Revenue)으로 부터 납세자번호(IRD)를 부여 받아 발생한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뉴질랜드에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사무소(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음.
 - 부득이하게 연락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보수집이나 연락업무 등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은 할 수 없음.
 -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직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직원 채용이 불가능 함. 현지직원 채용 시 고용에 따른 경비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되며,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상 연락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지사나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되어야 함.
- 뉴질랜드에서 법인 혹은 지사 설치 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으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형식적인 NZ\$ 1,000의 자본금으로 법인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한국에서의 투자도 부동산(토지) 취득, 소규모 자영업체의 개설 혹은 인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방식은 단독이 되는 것이 보편적임.

6. 투자입지여건

가. 투자입지여건 개황

뉴질랜드는 인구 협소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가 힘든 바, 제조업 여건이 취약하다. 따라서 제조분야에 외국인 투자는 극히 드물며 포트폴리오 투자와 자산투자가 활발한 정도이다.

한국 기업의 제조업 투자도 식품기업인 오뚜기가 유일할 정도인데 이는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서도 높은 인건비, 제조업 부재로 인한 산업연관효과의 미약 등 투자환경으로 인한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 목재 가공업체들이 뉴질랜드에서의 원목 가공수입을 위해 진출한 바 있으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남태평양 참치, 오징어 잡이를 위해 일부 수산업체들이 남 섬 지역에 진출해 있기도 하다.

투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별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며 특히 뉴질랜드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여건이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자원관리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시장성 평가

- 투자인센티브 및 주변 시장여건,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검토
- 정부의 규제여부 및 기존 진출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 경쟁환경 및 인프라 검토 분석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분석
- 뉴질랜드 인증제도 및 산업표준 등에 대한 검토

□ 사업계획 수립

- 뉴질랜드 유력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착수
- 규모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편의성, 경제성 및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교포 변호사 및 회계사 활용이 권장됨.

□ 사업장소 입지선정

- 입지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허가 용이성 여부
 - 개발지역 여부 및 토지획득 등에 따른 편의성
 - 인근 주민의 동의 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
 - 보건, 안전, 환경규제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침
 - 부동산 관련 세제
 - 노동력 확보 문제

□ 금융

- 은행대출 가능성 및 비율 등
- 지주회사로부터의 현금 출자
- 주식 발행 등 자금조달 방법
- 금융 환경 전반에 대한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사업 이해

□ 노무관리

- 노동법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전 이해
- 적정 고용인력의 관리 및 소득세 등 세제 검토
- 교육 훈련 및 유용인력의 확보 여부

나. 주요 지역별 특징 및 투자여건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 지역별 산업특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오클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소, 양을 중심으로 한 낙농 및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 되는 현상에 따라 일부 지방은 해당 지역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나 특별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단지 행정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오클랜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투자할 경우 가장 유의할 부분은 노동력의 조달로서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집중되어 있는 오클랜드 지역을 제외하고는 광활한 지역에 인구가 흩어져 있어 숙련된 노동인력을 찾는 것이 사실상 거의 어려워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투자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 오클랜드 지역(Auckland Region)

-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인 오클랜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체 430만의 인구 중 1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경제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오클랜드를 이주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최근 5~6년간 부동산 투자 및 건축붐이 일어난 바 있으나 현재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다소 주춤하는 상황임.
- 세계 50위권의 오클랜드 대학 및 다수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산업 역시 크게 발달함.

□ 와이카토 지역(Waikato Region)

- 낙농, 목축업의 중심지로서 목장 및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해 세계 최대의 낙농 유통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폰테라의 유가공 공장 등이 위치해 있음.

□ 웰링턴 지역(Wellington Region)

- 행정 수도인 웰링턴시가 위치해 있으며 시를 중심으로 관광 및 와인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웨타스튜디오가 위치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화산업 역시 각광받고 있음.

□ 캔터베리 지역(Canterbury Region)

- 뉴질랜드 제 2의 도시인 크라이스처치가 중심도시이며 양을 중심으로 한 목축업과 인근에 퀸즈타운 등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위치해 관광산업 역시 크게 발달해 있음.

7. 노무관리

가. 노동법 및 노동시장

현 노동법(2003년 12월 4일 개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강화하고,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노동자가 보호되고, 사용주가 기존의 고용 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체가 매각될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인데, 새로운 법안에 의할 경우 노동자는 이전 직장에서의와 똑 같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승계할 권리를 부여 받게 되며, 해고될 경우 계약서에 해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금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기본적인 고용 여건

남한의 3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가 430만 명에 불과한 만큼 인력이 부족하다. 이를 아시아 및 남태평양 이민자들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인건비 및 서비스 요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급 인력은 보수조건이 보다 우수한 호주 및 미국 등지로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과 단순인력 사이의 노동시장 차별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택 및 건설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경기호조세가 유지되면서 숙련 노동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임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 및 중앙 은행도 이러한 변수가 물가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 고용절차

뉴질랜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0인 이하 회사 비율이 96%를 넘고 있다. 제조업은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신문광고, 취업알선 전문회사를 통하거나 일부 대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직원 1, 2명 정도의 채용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직원 채용 방식으로는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내 문건(사내 이메일, 사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

이들은 직원 채용 후에 통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고용계약 체결은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제도와 관행이 지배적임을 고려해야 한다.

3) 인력 수급

2007년 말 기준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3.4%로 전년 12월 실업률에 대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2002년을 시작으로 인구 순 유입이 계속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기업들의 경우 숙련된 노동자 기술자들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이민번호의 대폭 축소와 함께 뉴질랜드 인들이 보수조건이 양호한 호주 등지로 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4) 외국인의 고용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비자와 취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 입국을 위한 단기 비자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으나 취업 허가는 받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고용하고자 하는 피고용인이 특별한 경험과 기술이 있고, 뉴질랜드에서 피고용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취업허가가 발급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한 노동력을 "뉴질랜드 현지 노동시장"에서 구할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되기도 한다.

5) 임금 수준

2007년 말 기준 뉴질랜드 근로자들의 평균 주급은 NZ\$ 667 이며, 최저임금은 2008년 9월 기준 시간당 NZ\$ 12.00 (약 US\$ 8.4) 이다.

6)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006.3.27 성인 최저임금을 시간당 NZ\$ 11.25 (청소년 최저 임금 NZ\$ 9.0)으로 인상한 바 있으나, 2008.4.1부터 성인, 청소년 구분 없이 일괄 NZ\$ 12.00로 인상하였다.

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복지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1930년대 최초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했을 정도로 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와 실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광범위한 의료 혜택도 무료 제공하고 있다.

현재 Work and Income이라는 기관과 IRD (국세청)에서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Work and Income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과 관련된 수당 지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IRD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세금 환급 및 소득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말에 있었던 총선에서 노동당 정부가 공약으로 발표했던 Working For Family 라는 근로자 수당 지원 프로그램이 2007년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중산층은 대폭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되며 저소득층은 실질적인 수당의 증액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주요 사회 보장제도

□ 가족수당(Family Tax Credit: 이전의 Family Support에서 명칭이 바뀜)

만 18세 미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소득 NZ\$ 56,000~130,000 이하의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함.

2007/2008 회계연도 가족수당 지급 기준

만 13세 이하 기준 자녀 수	연소득 상한금액(세전)
1 명	\$56,320
2 명	\$71,140
3 명	\$84,960
4 명	\$100,780
5 명	\$115,600
6 명	\$130,420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

□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16세 이상의 실업자에게 지급

□ 노후연금 (National Super Annuation)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3) 출산 휴가 및 수당

현재 출산 휴가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에게 14주까지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당 NZ\$ 372.12의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Department of Labour 웹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하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에는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을 비롯 양로수당(Rest Home Subsidy), 고아수당(Orphan's Benefit), 미망인 수당(Widow's Benefit), 장애인 수당(Invalid's Benefit)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다.

근로수당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 가능한 정부 기관은 다음과 같다: Department of Work and Income New Zealand, IRD, Department of Youth and Family Services

4) 의료보험제도

뉴질랜드는 사회보장 선진국답게 의료보장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제도는 가입이 의무화된 것이 아니며 가입여부 및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가족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종류 및 옵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시 입원, 수술만 보장하는 사보험(연간 1인당 NZ\$ 200~300)에 가입하고 있다. 일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NZ\$ 1,000이상의 상품에 가입하고 있기도 한데, 전반적으로는 가족 단위로 NZ\$ 1,000~2,500 정도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는 성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보험 혜택은 가입 이전의 질병은 해당되지 않으며 새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5) 국가 부담의 의료보장체계 확립

뉴질랜드는 국립병원에서의 치료비용,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용, 임신기간과 출산 시의 모든 비용, 6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의 방문 치료비용, 유아, 초등학생을 포함 한 14세까지 기본 치과 치료 비용 등은 국가부담으로 무료로 가능하다.

교통사고, 부상, 화상, 골절 및 기타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각 지역에 소재한 응급 전문 기관(Accident and Emergency Clinic)에서 치료 가능하며, 비용은 정부기관(ACC)이 일괄 부담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체계는 앰블런스를 이용한 응급환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우 가정의(GP: General Practitioner)의 검진을 거친 후 2차 진료기관으로 가게 되어있다.

국립병원의 진료비용은 영주권자 이상의 경우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데, 입원 시 진찰비, 치료비, 입원비 등은 무료이다. 사립병원은 국립병원보다 다소 규모가 작고 서비스가 좋지만 개인부담이며 치료비용이 비싸 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한 이용률이 아주 낮다.

그 밖의 특이한 사항으로 뉴질랜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무상 치과진료를 시작한 최초의 국가로서, 13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은 학교의 치과 간호사로부터 무료로 정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3에서 18세의 미성년자들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황

뉴질랜드의 조세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은 뉴질랜드 국세청(IRD)이며,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 및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들 수 있다.

매년 4월 1일~익년 3월 31일을 기본 세무 회계연도(이하, 세무연도)로 하여 경상비용을 제외한 순수 기업 이윤 및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이윤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세무 연도의 제 4월, 제 8월 및 제 13월에 추정세액(Provisional Tax)을 선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세무연도의 제 13월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IRD 승인 하에 기업별로 세무 연도 조정 가능). 세무연도 13월은 차 세무연도 1월을 의미한다.

나. 조세종류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는 33%였으나 2008.4.1부터 30%로 인하했으며, 외국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세율은 현행 연 소득 NZ\$ 38,000까지 19.5%, NZ\$ 38,001~60,000에 대해서는 33%, NZ\$ 60,000이상은 39%가 부과되는 누진제도를 시행 중이다.

상속세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세(Gift Tax)는 연간 NZ\$ 12,000이상은 IRD에 신고하여야 하며, NZ\$ 27,000이상의 경우 증여 금액에 따라 5~25%까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등의 배당금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금 이자 소득은 개인의 연간 총 소득 금액과 합산되어 개인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신고번호(IRD 번호)가 없는 경우 무조건 39%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GST)는 12.5%이며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가 종업원에 대하여 급여 이외의 부가급부 제공 시(예를 들면 업무목적 외의 차량 제공 시, 원가 이하 금액으로 자사제품 제공 시 등) 피고용인 한 명 당 분기별 NZ\$ 200 또는 전체 피고용인에 대해 연간 NZ\$ 15,000을 넘기는 금액에 대해 6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비거주 과세 보유자일 경우 뉴질랜드와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시민은 10%, 그렇지 않으면 15%가 징수되며, 비거주 과세 보유자가 아닐 경우 2%가 징수된다. 비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비거주 과세 보유자로 분류된다.

다. 높은 법인세 부과가 투자장애요인

2006년 OECD의 발표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법인세율(2008년 기준 30%)은 OECD 평균인 26.2%보다 높아 투자 및 기업활동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 주요국가 법인세 비교

상위 순위	국가	세율%	하위순위	국가	세율%
1	스페인/미국	35	1	스위스	8.5
3	프랑스	34.43	2	아일랜드	12.5
4	벨기에	33.99	3	헝가리	16
5	이탈리아	33	4	아이슬란드	18
7	영국/호주/뉴질랜드	30	5	슬로바키아	19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금융시장 개황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이 통화의 발행과 금융 및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재무관리 및 재정정책은 재무부(Treasury)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경기과열 및 인플레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2004년 6차례, 2005년 3차례 등 9차례 걸쳐 기준금리(OCR)를 1.75% 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부동산시장 급랭과 고물가 및 세계적인 경기위축에 따라 금리를 2차례 걸쳐 7.5%로 낮췄다.

2008년 9월 기준

변동일	변동폭(%포인트)	기준금리(%)
2008. 9. 11	0.5	7.50
2008. 7. 24	0.25	8.00
2007. 7. 26	0.25	8.25
6. 07	0.25	8.00
4. 26	0.25	7.75
3. 08	0.25	7.50
2005.12. 08	0.25	7.25
10. 27	0.25	7.00
3. 01	0.25	6.75
2004.10.28	0.25	6.50
9. 09	0.25	6.25
7. 29	0.25	6.00
7. 01	0.25	5.75
4. 29	0.25	5.50
1. 29	0.25	5.25

자료: Reserve Bank of New Zealand

현재의 뉴질랜드의 공금리(OCR)는 2차에 걸친 인하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압력이나 환율변동에 따라 연내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연내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EIU는 2009년 말까지 뉴질랜드 정부가 금리를 6.7%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5대 시중 은행은 모두 호주 등 외국계이며, 주요 상업은행은 BNZ(Bank of New Zealand), ASB Bank, ANZ Banking Corp., National Bank, Westpac Banking Corp. 등이 있다.

뉴질랜드 자본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2001년에 설립된 Kiwi Bank가 유일한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착근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으로는 국민은행이 96년 5월 사무소를 개소하고 97년 9월부터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는 Private Savings Bank, Building Society, Merchant Bank, Finance Companies 및 Stock and Station Agent 등이 있다.

나. 은행 제도

뉴질랜드 은행은 Reserve Bank Act 1998에 따라 허가 받은 상업은행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은 registered banks로 중앙은행 지준을 엄수는 물론 외환 신고 및 업무 감사 등을 받게 된다.

뉴질랜드 금융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단행된 바 있으며, 이후 자본 시장이 급속히 활성화 되었으며 증권시장 규모가 확대와 선물 옵션이 도입되었고 이 자율과 환 위험 방지에 기여하게 되었다.

최근 리먼 브러더스 등 미국 투자은행들의 몰락에 따라 뉴질랜드 은행들도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뉴질랜드 금융시스템은 안전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2008년 초 예금지급 유예신청을 낸 도체스터뱅크와 같은 부실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7월에 이어 9월에도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도 은행 살리기라는데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다. 기타 신용기관

보험업으로 AMP, AXA(구 National Mutual), Colonial, NZ Insurance, Tower Corporation, Prudentials 등등의 보험 회사들과 소규모의 신용 대출 회사들이 있다.

라. 변동환율제도 운영

뉴질랜드는 1985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후 외환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바스켓방식의 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였으며, 외환시장도 완전히 개방하여 현재는 외환관리상의 제약이나 국내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가 변동이 심하여 2004년부터는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2001년만 하더라도 미달러화의 42% 수준에 불과했던 뉴달러화가 2008년 3월에는 80%를 넘어섰다가 최근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달러화의 변동 추이(연도 말 기준)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3	2008.9
NZ\$1=US\$	0.42	0.51	0.65	0.71	0.70	0.69	0.77	0.80	0.67

자료: Reserve Bank of New Zealand

마. 은행의 경쟁력

뉴질랜드의 5대 시중은행은 모두 외국은행이며 최근 정부 주도로 KIWI BANK가 설립됐으며 외국계 자본의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 뉴질랜드 은행들은 위기 발생시 외부 도움이나 개입 없이 자력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P 보고서에서도 뉴질랜드는 아-태 지역에서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은행 리스크가 가장 낮은 국가로 발표한 바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영국의 피치(Fitch)사도 뉴질랜드의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는 조정사유에 대해 뉴질랜드가 국제 상품가격의 변동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만 2007년중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지속적인 공공 부문 개혁과 민간 부문 투명성 및 효율적인 외채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높은 저항력을 갖춘 점을 조정배경으로 밝힌 바 있다.

바. 외환시장 개입을 천명한 새로운 외환제도 전환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은 필요할 경우 중앙 은행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외환정책을 2004. 3. 17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985년 자유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한 이후 한번도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중대한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3년 20% 절상에 이어 2004년에도 가파른 절상추세를 이어오던 뉴질랜드 달러화도 외환정책의 변화와 함께 강세가 일시 둔화된 바 있다.

사. 자금 조달

1) 주식시장 (NZX)을 통한 자금 조달

- NZSX (New Zealand Stock Market):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모두 169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 NZDX (New Zealand Debt Market): 채권시장으로서 2007년 12월 기준, 총 52개사의 채권이 등록되어 있다.
- NZAX (New Zealand Alternative Market): 중소기업의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시장으로서 NZSX의 상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 등을 상대로 함. 2007년 12월 기준 29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2)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전국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통한 다양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나 중앙은행의 연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당히 오른 상태이며 은행권 기업 신용대출의 경우 14~15%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10~11%대이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협소한 시장규모

인구가 430만 명에 불과해 수입 수요가 크지 않으며, 남한의 2.7배에 달하나 남 섬과 북 섬에 흩어져 있어 품목별 마케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제조업이 취약하고 소비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구조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50% 이상이고 개혁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나. 소비자 특성

1인당 국민소득은 US\$ 25,000~30,00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나 미국 달러의 약세로 인해 초래된 수치인데다 최고 39%에 이르고 있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한적이다.

검소하고 보수적이며 실용적인 소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유행이나 고가품을 찾는 경향이 덜하고 적정 가격의 품질이 좋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구매한다. 중고가 상품을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절과 같은 특수 세일시즌을 최대한 활용하여 싸게 사려는 경향을 보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중저가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첨단 신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력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 한국상품 인지도

IT, 전자 및 기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제품에 대한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소비자들이 가격 위주의 실속 구매를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인구가 적어 수입규모가 작다는 점이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라.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

영업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수시로 폐지되며 광범위한 중저가 제품시장과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 공산품들이 무관세나 저율 관세의 영향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어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전통적으로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해왔으나 최근 미국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저가품 시장도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

마. 거래방식, 제품 선호도 및 상관습

인구와 시장규모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 소액주문이 주종을 이루며, 주문량이 적은 반면 주문회수가 비교적 많고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대금 결제도 비용절감을 위해 L/C방식보다는 T/T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보수적 상관습을 갖고 있으나, 특별히 유의해야 할 상관습은 없다.

바. 유통구조

과거의 전문 수입상->중간 도매상->소매상의 정형화된 구조에서 최근 대규모 수입상들이 일반 소비재를 직접 수입하여 대규모 직판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1회 주문단가가 높은 품목(산업용 원자재 및 설비 등)은 소규모의 수입업체들이 수출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해 극소수 수입상들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

2. 물가정보

항 목	기 준	가격(USD)
1) 사무직(일반)	월 급여(대졸초임)	2,700
2) 사무직(비서)	월 급여(학력불문 초임)	2,200
3) 사무직(중간관리자)	월 급여, 한국기준 과장급	3,000
4) 생산직(일반)	월 급여(초임)	1,500
5) 생산직(중견)	월 급여, 엔지니어급,	2,000
6) 상여금	연간 %	N/A
7) 추가근무수당	평일, 휴일 %	150%
2. 통신환경		
1) 전화 개통비	1회선 / 가입비, 장치비, 설치비 등 기타 비용	3
2) 전화사용료	월 기본요금, 3분(시내, 시외 평상시간)	27
3) 공중전화(시내)	3분(평상시간)	1
4) 국제전화(현지 - 서울)	3분(평상시간)	4
5) 휴대전화 개통비	가입비	30
6) 휴대전화사용료	월 표준기본요금, 1분(평상시간)	26.65기본
7) 인터넷 개통비	가입비, 장치비, 설치비 등 기타비용	165
8) 인터넷사용료	월 기본요금, 표준속도	20
9)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2~3페이지)	1
10) 국제우편(현지 - 서울)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3
11) 특급우편(현지 - 서울)	DHL, 1개, 1kg 이하	67
3. 자동차 및 교통환경		
1) 자동차(2000cc) 구입가	한국산 중형 기준, 오토기어(A/T), 에어컨	20,000
2) 일반휘발유(1L)		1.5
3) 경유(1L)		1.5
4) 자동차등록비(2000cc)		175
5) 자동차보험료(2000cc)	1년 계약, 신형차, 종합보험, 신규가입차	1,200
6) 지하철(기본요금)		NA
7) 시내버스기본요금)		1
8) 택시(기본)	기본요금	2
9) 택시(추가)	추가요금(1Km 당)	1
4.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1) [임차]중급아파트(150m ² /월)	침실3개 이하, Semi-finished	2,500
2) 임차]중급단독주택(150m ² /월)	대지 500m ² 미만 및 침실 4개 미만 Semi-furnished	3,000
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주일분 x1.125(부가세율)	0.25%
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4주일분	90%
5) 가정용전기요금(1kWh)	월 기본요금, 추가요금	20
5. 의료'보험		
1) 의료보험료	4인 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300
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60
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20
6. 교육환경		
현지인 학교(기부금) (입학금, 수업료는 무료)	초등 1년간	200
	중등 1년간	300
	고등 1년간	600
7. 레저. 오락		
1) 골프장 그린피	비회원 18홀 1라운드	60
2) 골프장 회원권	매매가능 18홀 (고급)	10,000

8. 호텔		
1) 특급호텔(정상) - 5성급	싱글 1박	230
	트윈 1박	230
2) 특급호텔(할인) - 5성급	싱글 1박	130
	트윈 1박	130
3) 중급호텔(정상) - 3성급	싱글 1박	140
	트윈 1박	140
4) 중급호텔(할인) - 3성급	싱글 1박	80
	트윈 1박	80

주: 호텔요금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하며, 성수기 요율은 정상 요율과 할인 요율의 중간수준이라고 보면 무난함.

3. 바이어 발굴

가. 기업 디렉토리를 활용한 바이어 발굴

- 가장 일반적이나 가장 강력한 바이어 발굴방법은 디렉토리를 통해 1차 잠재바이어를 찾는 일이며, 이를 D/B 화하고 텔레마케팅을 전개한다.
- 수시 업데이트되어 온라인 제공되는 기업 디렉토리를 활용한 다양한 품목 및 분야의 바이어를 발굴, 시장개척단 및 지사화 등 무역관 사업에 활용한다.
 - Yellow page: <http://www.yellowpages.co.nz>
 - Access New Zealand: <http://www.accessnz.co.nz>
 - UBD: <http://www.ubd.co.nz/>
 - Kompass : <http://www.kompass.com>

나. 신문 및 잡지 광고

- 시개단 상담주선 등의 경우, 텔레마케팅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 및 잡지, 교포 신문등을 통해 바이어를 찾기도 한다.
- 전국을 커버하는 일간지로는 The New Zealand Herald(www.nzherald.co.nz)가 유일하며, 광고료는 일반 지면 10Cmx15Cm 크기의 광고료가 US\$ 1,500 수준이다.
- 교포 신문으로는 잡지를 포함하여 10종 정도가 있으나, 뉴질랜드 타임스(교포 신문, www.nzkoreatimes.co.nz)가 가장 활발하다.

다. 기존 고객 등 개별 바이어 접촉

- 시개단, 지사화 등 무역관 사업을 통해 관리되는 바이어를 직,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바이어를 발굴하고 이를 D/B로 구축하며, 매번 업데이트하여 활용한다.
- 고객관리 및 신규 수요 발굴 그리고 새로운 거래선을 소개 받는 등 복합적인 업무 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일정수준 검증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라. 전시회 참관/참가

-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및 동향 그리고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전시회를 참관하며, 잠재 바이어를 발굴한다.
- 2009년 9월에는 ‘오클랜드 홀쇼’에 한국관 형태의 참가를 계획 중에 있는데, 이 전시회는 각종 생활용품은 물론 건축자재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제품이 전시되는 바, 관심있는 우리기업이 참가 희망 시에는 무역관을 접촉하시기 바란다.

마. 주요 기관 접촉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아래와 같은 경제 유관기관 및 단체 접촉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기도 한다.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1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www.nzte.govt.nz
2	Investment New Zealand	www.investnewzealand.govt.nz
3	Employers &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ema.co.nz
4	Waikato Chamber of Commerce	www.waikatochamber.co.nz
5	New Zealand Agritech	www.agritech.org.nz
6	Deer Industry New Zealand	www.nzgib.org.nz
7	FashioNZ	www.fashionz.co.nz
8	Fonterra	www.fonterra.co.nz
9	NZ Marine	www.nzmarine.com
10	Meat and Wool New Zealand	www.meatnz.co.nz
11	New Zealand Winegrowers	www.nzwine.com
12	Organics Products Exporters	www.organicsnewzealand.org.nz
13	New Zealand P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pine.net.nz
14	Plastics New Zealand	www.plastics.org.nz
15	Seafood Industry Council	www.seafood.co.nz
16	Software New Zealand	www.nzsa.org.nz
17	Textiles New Zealand	www.textilesnz.org.nz
18	Turners and Growers & ENZA	www.turnersandgrowers.com
19	New Zealand Trade Centre	newzealandtradecentre.com
20	Canterbury Employer Chamber	www.cecc.org.nz
21	Automotive Parts & Accessories Association	www.apaa.co.nz
22	Business NZ	www.businessnz.org.nz
23	New Zealand Food & Grocery Council	www.fgc.org.nz
24	New Zealand Ice Cream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nzicecream.org.nz
25	Packaging Council of NZ	www.packaging.org.nz
26	NZ Juice & Beverage Association	www.nzjba.org.nz
27	NZ Bio	http://www.nzbio.org.nz
28	Marine Industry Association	http://www.nzmarine.com/
29	Boating Industry Training Organisation	http://www.nzmarine.com/
30	Auckland Chamber of Commerce	www.b-vital.com

바. 기존 고객 대상 발굴

- KOTRA 오uckland 무역관 홈페이지 인콰이어리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고객 및 해외 고객의 발굴 및 거래 알선에 활용한다.

사. 전시회 정보를 활용한 바이어 발굴

- 전시회 개최기관을 통해 참가업체를 확인하고 품목별로 이들 업체를 분류, 업무에 활용한다.
- dmg world media (NZ) Ltd
 - 주소: Level 1, 99/107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PO Box 9682, Newmarket,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64-9) 976 8300
 - 팩스: 64-9) 379 3358
 - 이메일: info@nz.dmgworldmedia.com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되고 있으며 세일즈 출장이나 상거래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철저한 신용사회라는 점도 서구 일반의 경우와 대동소이하여 시간 엄수 및 약속의 성실한 이행 등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신뢰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구인들은 가족중심적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평일 저녁식사를 접대할 경우에도 주의를 요한다.

나. 수입관행- 현금거래 선호

통상의 수입 절차 및 관행이 일치하며 대금 결제방식은 L/C보다는 T/T로의 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T/T결제는 소액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출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는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겠다는 수입상도 있다.

샘플주문, 테스트오더 등의 경우 최근 Kotra의 소액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인 KOPS시스템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KIWI(뉴질랜드인들을 통칭하는 언어) 수입상들이 L/C 대신 T/T 송금을 원하는 이유는 L/C 개설비용(거래금액의 0.3% 내외의 수수료, 대개 거래은행과 수수료 상한선에 합의하며 상한선은 대체로 NZ\$300달러 내외임) 절약하기 위해서인데, 거래상대방과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되면 L/C개설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T/T 거래 방식에 커다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일상적 거래에서 신용위주의 거래가 정착된 때문인데, 사전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2차 분할송금 마지막 선적물품의 도착과 인도 시 잔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어, 나름대로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다. 거래 유의사항

우리 제품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어들은 아직도 한국산을 중국 혹은 동남아 제품과 유사하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일부 고가의 브랜드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저가이면서 품질 보증이 되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실용적이며 사치에는 관심이 없고 실생활에 대한 기여를 거래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 들어 자동차, 가전 제품들의 소개로 가격, 품질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사후서비스 미흡, 소량 주문 기피, 납기 지연 및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으로 가격 및 품질 이외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일본이나 대만 등에 뒤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와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규모는 작지만 뉴질랜드를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직거래도 점증하는 추세이다.

라. 비즈니스 에티켓

시간 엄수 및 약속 성실 이행이 중요하며 일반적인 서구적인 생활방식과 비즈니스 사고가 거의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문화 혹은 관습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특별한 에티켓은 없다.

마. 상담 유의사항

기존 거래선이 있는 바이어를 접촉할 경우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상당히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 어긋날 정도는 아닌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오후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 기간이나 휴일을 방해 받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자사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확실하여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바. 상담 체크포인트

1) 바이어를 배려한 상담준비

- 회사 PR자료 준비 (영문): 회사규모, 연혁, 재정상태, 생산능력 등
- 카탈로그 및 견본준비
- 복장: 상담 복장은 정장이 원칙
- 명함
- 오퍼 시트, 인보이스 양식 준비
- 메모지

2) 바람직한 바이어 접촉방법

□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성의 있는 자세로 상담에 응하고 바이어와의 눈높이 조절 및 의사소통을 통한 우호적인 분위기와 신뢰감 조성(최근 한국의 월드컵 및 현지의 럭비관련 대화가 유익함)

□ 시장특성 인지 및 신뢰

소량소액 다품종 시장임을 감안한 상담으로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 요청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기한 준수를 포함, 바이어와의 상담 시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이행으로 거래 기본여건 조성

□ T/T 거래방식 선호

소액주문으로 대금 결재조건이 L/C가 아닌 T/T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T/T의 이점을 살린 거래가 상당히 많으며 선호도가 매우 높음.(L/C 수수료 문제)

□ 가격산정 및 적기 딜리버리에 주의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출 전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검사가 필수 조건이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요비용을 감안해야 함.

선편이 월 2~3회 이므로 딜리버리 스케줄 작성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유럽 업체와 거래 중인 업체와 상담 시 기존 거래선을 변경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확신과 영수가 필수적임.

시장조사 시 소매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기간이 길고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됨. (일반 제품의 소매가격은 수입 가격의 4배 수준임)

□ 바이어 접촉방법 및 사후응대

많은 한국 업체들이 접촉방법의 미숙으로 거래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함.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카탈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각종 거래조건, 제품 설명서, 샘플 등 제품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거래희망 여부를 팩스,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음.

□ 침착한 대응

뉴질랜드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1~2명의 직원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구매 담당자가 해외 출장, 휴가, 외출 등으로 상당 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음.

이로 인해 한국업체가 보낸 서류에 대한 검토도 자신들의 계획에 맞춰 검토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당시에는 필요성이 없어 회신하지 않을지라도 장시간이 소요된 후에 연락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정확한 담당자를 알게 되면 관련자료를 송부한 후 회신이 없더라도 좀더 기다리거나 우호적인 안부편지를 보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함.

□ A/S 및 신뢰성 유지

한국 업체들의 A/S나 클레임 해결 등 사후 관리는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는 소량 주문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나 신뢰도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됨을 유의해야 함. 역으로 A/S나 클레임 신속 해결을 통해 신뢰도가 높아지면 거래 물량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가. 인구 400만의 소규모 시장

뉴질랜드는 인구가 430만에 불과한 소규모 시장이고 그 중 상공업이 가장 발달한 오클랜드 광역권은 인구 120만 명 수준이다. 뉴질랜드 회사의 96% 정도가 직원 5명 이하인 소규모 비즈니스로 운영되며 1차 낙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3차 서비스 산업 (관광, 유학)이 발달한 반면 상대적으로 2차 제조업은 부진한 상태이다.

인구 규모가 적어 따라 공산품 수요도 소량 다품종 시장으로 요약된다.

나. 보수적 성향

일단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값싼 단가를 이유로 여기저기 거래처를 옮기기 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동안 신뢰를 쌓아온 기존 파트너와의 거래를 지속하고 싶어한다.

이에 따라 이미 거래처가 있는 업체와 신규 거래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며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까다로운 사항들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다. 저가품 선호

국민소득에 비해 세금 공제후의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저가품의 시장이 발달했다. 통계 수치상 1인당 국민소득이 US\$25,000~30,000에 달하고 있으나 소득세가 최고 39%에 달해 가처분 소득은 많지 않으며, 검소하고 실용적인 생활태도상 중저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라. 소비재 특수

소비재의 구매 시즌은 12월의 성탄절 특수와 4월의 부활절 특수가 있으며 선물용품, 의류, 장난감류 및 전자 제품 등은 계절적인 수요에 많이 좌우되기도 한다.

특수 기간 중에는 30~50%의 할인 판매가 일반적이다.

마. 결제 방법으로 T/T 선호

비용절감을 위해 대금 결제 방식은 L/C 보다는 T/T 를 선호하고 있다. 심지어 수출상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수입상도 있다. 하지만 첫 거래일 경우, L/C 를 오픈하는 것을 권장한다.

바. 철저한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 구비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회사 영문 카탈로그, 영문 홈페이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준다. 대부분 한국 제품 하면 유럽이나 일본 제품보다는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고 중국 제품보다는 가격은 높지만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품질 위주로 초점을 맞추어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회사 대표보다는 담당자와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

중, 상 규모의 회사에서는 담당자가 구매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직책보다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제품의 장점을 설득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과 접촉을 할 때는 Managing Director 혹은 General Manager 와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에서 업무의 분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 부재 시나 휴가 시에는 업무진행이 중단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심지어 관공서에서도 담당자 부재 시에는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뉴질랜드 현지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국내 K사는 쓰레기 압축기계 전문 생산 업체로서 국내의 우수기업과 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고 우리 무역관에서는 뉴질랜드 쓰레기 처리 정책 및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정보를 업체에게 전달하고 있었음.

뉴질랜드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는 있었으나 효율적인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쓰레기 압축에 관한 관심이 일고 있었으며 이런 현상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있던 중 세 명의 현지 바이어들과의 연락에 성공하였으며 이들 중 K사의 요구에 따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바이어를 수 차례의 상담 및 협상을 통해 발굴하여 2006년 6월 사이버 상담을 통해 양 업체간 첫 만남을 성사시킴.

나. 현지 시장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AS

첫 상담 이후 K사의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인 바이어는 곧바로 샘플 주문을 내었고 K사도 신속하게 주문에 응하여 샘플을 받아 본 바이어는 쓰레기 압축 기계의 뉴질랜드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였으며, 또한 현지 실정에 맞게 안전장치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이에 현지화에 성공한 제품을 새로 개발함.

은행 지급보증서 수령 및 샘플기계 이상으로 인한 AS 처리 등 양사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무역관이 중간에서 거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며 현지 바이어의 홍보를 돕고 있던 중 양사간 1차 선적분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어 10월 초 20대의 압축기가 오클랜드에 처음으로 도착함.

다. 성공적인 시장 진입

이와 같은 성공에는 한국 K사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의지와 바이어의 요구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결단력이 큰 몫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여타 외국의 압축기보다 가격 및 품질에서 뛰어난 우수한 제품의 개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또한 뉴질랜드의 쓰레기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현지 실정 및 법규에 맞는 기계의 개량과 바이어와의 긴밀한 협력이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에 큰 몫을 함.

7. 이주정책 가이드

가. 이주정책 개요

2002년 11월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이민법 개정이 있었으며 외국인 이민이 약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가 이민 억제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이민은 2008년 9월 기준 약 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1) 외국인 투자이민의 제한 추세

2007.6.6 발표된 신 투자이민법은 2005년 6월 발표되었던 이민법보다 실질적인 투자금액을 더 올림으로써 사실상 투자이민의 문호를 더 좁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에 발표된 투자이민법에는 모두 세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먼저 Global Investor 카테고리는 투자금액만 무려 NZ\$ 2,000만(최소 실제(Active) 투자 금액이 NZ\$ 5백만)으로 4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요구됨. 그러나 IELTS 영어 시험이 면제되고, 최소 정착 자금과 나이 제한 역시 없으며 다만 전체기간 중 매년 20% 이상 기간의 뉴질랜드 체류만이 필요함. 그리고 기존 투자이민법과 또 다른 점은 예 치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어든 것이다.

그 다음으로 Professional Investor는 NZ\$ 1천만(최소 실제 투자금액이 NZ\$ 200만)을 투자해야 하고, IELTS 4.0점의 영어점수와 4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필수이다. 나이 제한은 최대 64세이고, 4년 중 매년 30% 이상 뉴질랜드에 반드시 체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eneral Investor-Point System은 현재의 투자이민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4년 동안 NZ\$ 250만 투자(Semi-Active), IELTS 5.0점, 최소 정착자금 NZ\$ 1백만, 최소 4년 이상의 사업경력, 매년 40%이상의 뉴질랜드 체류가 필요하며 나이 제한은 54세이다.

또한 장기사업비자의 수혜 등에 힘입은 초등학교 저학년 조기 유학생이 9,000여 명에 이르는 등 한때 유학 대상국으로도 인기를 얻었으나 환율의 강세와 함께 사실상 장기 사업비자 발급을 중지함으로써 주요 유학 대상국으로서의 인기를 잃고 있다.

2) 주택 구입방법

주거 희망지역의 부동산업자를 접촉하여 매물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많은 교민들이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불편한 경우 도움이 되고 있다. 구매를 원하는 주택의 등기 상황이나 건축물 허가 상황 등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소와 City Council에서 유료로 사본을 입수 할 수 있으며 그 사본에 무허가 증축 또는 미등기 상태, 금융권의 저당권 설정 등등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가급적 열람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 구매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판매에는 주택가의 약 4~5%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주택 구매 시에 등기는 직접 해도 무방하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사전 조사, 조건부 구매 및 쌍방간 대금지불, 권리 등을 정리하므로 변호사 선임도 고려 사항이다. 구매 후 등기 이전 또는 조건 이행 등의 정리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변호사에게 의뢰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로 계약하여 장기 또는 단기로 거주할 수도 있는데, 시내 APT와 가까운 거리의 일반 주택들도 임대 시장에 나와 있어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다. 통상 임대료는 주간 단위로 결정되어 2주마다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1주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에 상당하며 보증금(BOND FEE)은 2~4주 해당 금액을 정부기관에 예치하여 일방(대부분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그 비용의 변제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집기와 가구를 구비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나 임대료는 더 비싸고 입주와 전출할 때 가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망실이 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통상 입주 때 부동산 업자만 만나거나 집주인과 대면을 할 경우에 입주 전의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하여 입주할 때 억울하게 수리 비용을 지불(원상 복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주택의 구매 때도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당한 비용을 거래가격에서 할인 받는 지혜도 필요하다.

3) 계좌개설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자동이체 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전화: 64-9-366-1000)을 이용하면 외국어 사용이 필요 없으며, 그 외 ASB, BNZ, Westpac, National 및 ANZ 등의 은행에도 교민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전화 신청

각 지역의 Telecom회사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즉시 번호를 부여 받고 바로 최소한 2~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당일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시기가 단축되고 있다.

요금은 임차료로 일정액이 부과되고 사용량에 따라 이용료가 정해지는데, Auckland지역 내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해 일반전화라인으로 통화할 경우 사용료가 무료이다. 그러나 일반 전화로 시외전화, 국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각각 정해진 사용료가 부과된다.

일반전화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한국 식품점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전화카드를 이용할 경우 NZ\$ 50짜리로 20시간 정도 통화할 수 있다.

5) 비품 구입 및 사용

한국에서와 달리 뉴질랜드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정원 손질 도구와 사다리 등 집기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가전제품은 플러그 모양이 우리와 달라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며 240V로만 전력이 공급되어 100V용으로는 변압기를 필요로 한다.

TV와 VTR은 한국과 방송방식이 달라 구입시 NTSC 와PAL 방식 겸용의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각 주택 지역별로 있는 SHOPPING MALL에 유명 체인점들이 입주하고 있어 가전 제품, 집기 및 가구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는 한국과 달리 운전석이 반대쪽에 있는데 자동차 전문점, 수입상, 지역의 자동차 매매장 또는 경매장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교민잡지의 웹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매매되기도 한다.

나. 자녀 교육여건

1) 기본적인 여건

한국인들에게는 저학년 영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이민 또는 유학하는 사례가 많은데,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학군제에 따라야 한다. 즉 주거지에서 근접한 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바, 입학시킬 학교 주변에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 2000년 이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아시아계 이민이 늘면서 학군이 좋은 지역의 주택은 학군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기타 여건이 동등한 주변에 비해 10%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국립 및 공립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무상이지만(유학생 제외) 의무적으로 약간의 기부금(고교의 경우 약 US\$ 600)을 내도록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허가 심사 및 상당한 학비(약 US\$ 12,000)와 기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2) 뉴질랜드 교육의 개요

뉴질랜드는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로 국제적인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정보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뉘고 있으며 입학시기는 우리와 유사하게 2월이나, 학교 학년제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유치원은 만 4세까지이며 만 5세에는 6년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중학교는 2년, 고등학교는 5년이며 의무교육이고 대학교는 종합대학교(University)와 교육대학, 기술 단과 대학인 전문대학(Polytechnics) 등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 종합대학교는 뉴질랜드 전국에 7개에 불과하며 모두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 대학교이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가르치는데 전국에 25개가 있으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초보적인 교육에서부터 전문적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1년 미만도 있고 4년에 걸친 학사과정도 있으며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도 있다.

교육대학은 전국에 4개뿐이며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교사를 모두 양성하고 있고 2~4년 과정으로 구분되고 있다.

3) 유아원/유치원

만 1세부터 Day Care Centre, 만 2세부터 Play Centre에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형화된 교과 과정은 없고 주로 놀이를 통하여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지도하고 있다. 만 3세부터는 유치원(Kindergarten)에서 교육 받을 수 있다.

4) 초·중등학교

어린이들은 만 5세부터 초등교육을 시작하여 13세쯤 중학교(FORM 3) 과정에 입학하며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국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하이스쿨 혹은 컬리지)가 있다.

5) 대학교육

종합대학교는 모두 국립대학교로서 Auckland, Hamilton, Palmerston North, Wellington (이상, 북 섬), Christchurch, Canterbury, Dunedin(남 섬)에 있으며 학교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다.

전공과 학위 등급에 따라 3년에서부터 6년까지의 과정이 있으며 17-18세의 고등학교 과정인 Form 7을 마치고 대학입학자격시험 (Bursary)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원하는 학교의 학과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 뉴질랜드 종합대학

- University of Auckland(Auckland): 15,000명의 재학생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최대 대학
- The University of Waikato(Hamilton): 과학, 기술, 경영학 우수
- Massey University(Palmerston North): 농업, 원예, 수의학 우수
- Victoria University(Wellington): 행정수도인 Wellington에 있으며 행정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우수
- Lincoln University (Canterbury): 원예와 농업 우수
- University of Otago (Dunedin): 의학, 치의학 등 건강과학 우수
- The University of Canterbury(Christchurch): 공학 부문 우수

다. 현지 생활여건

1) 생필품 조달여건

식품이나 생활용품은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SHOPPING MALL의 생필품 체인점(PAK'N SAVE, BIG FRESH, WOOLWORTHS, COUNT DOWN, NEW WORLD, WAREHOUSE, K-MART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야간에도 생필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즈음은 이전과 공휴일 없이 매일(OPEN 7 DAYS) 개장하는 곳도 많아 한국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상당수 매장들이 저녁 7시경 문을 닫기는 하지만 24시간 내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체인점은 COUNT DOWN이 대표적인데 식품을 중심으로 팔고 있다.

2) 한국 식품 조달 여건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채소, 양념 기타 국산제품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가격은 국내보다 약간 비싼 편이다.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포장김치가 수입되고 있으며, 오uckland에는 김치 제조업체도 있다. 오uckland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매점)이 수십 개 존재하며 라면을 비롯 고추장, 된장 등 대부분의 한국식품 구입이 가능하다.

Hamilton, Wellington, Christchurch, Rotorua 등에는 각각 3~5 곳의 한국 식품점이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오uckland보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식당의 경우도 지역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데다 오uckland 시내에만 약 50여 개 이상의 한국 식당이 있어 원하는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시내 일부 지역(Queen Street)에 밀집된 한국 식당가도 형성되어 있다.

3) 레저 여건

지역별로 축구 경기장, 스포츠 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사회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좋으며, 요소요소에 산재한 골프장은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숲이나 공원, 해변 등지에서 산책, 피크닉, 자전거 타기 및 요트, 윈드서핑, 제트 스키, 낚시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캠프 장소도 많아 레저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4) 치안 상태

치안 상태는 양호하다. 그러나 대부분 퇴근 후에 외출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차량이 없이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매 가구당 2대 정도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최근 낮에도 빈집을 터는 좀도둑이나 소매치기가 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치안 상태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할 정도이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12~3월이 최상의 기후 여건으로 관광시즌)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이 한국과 반대이며 온대성 기후이면서도 4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해양국가로서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지 않고 온화하다.

그러나, 하루에도 4계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봄과 여름 및 가을은 괜찮으나 겨울(6~9월)에는 체감온도가 실제보다 낮다. 일반 주택은 한국처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고 우기와도 겹치기 때문에,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내부에서는 뼈 속까지 시리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전기 히터나 가스 히터를 사용해야 될 정도이며 한국인의 경우 전기장판 이용이 보편화 되어있다.

9월 하순 이후 점차 날씨가 온화하고 쾌적해 아침저녁 체감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 및 현지출장 등에 아주 쾌적하다.

또한 매년 10월 초부터 익년 3월 중순까지는 일광절약 시간제가 시행되어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이 취약하고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뉴질랜드는 통상 5시경 업무가 종료되어 여가활용 및 취미생활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서안해양성 기후로서 서풍이 부는 바람의 특성과 북동에서 남서의 방향으로 위치한 산맥의 영향으로 인하여 동서의 강우량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대 상업도시 오클랜드는 겨울에도 기후가 온화한 편에 속하며 남섬 하단에 위치한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몹시 강하며 벨슨지역은 일조시간이 가장 길고, 크라이스트처치는 연간 강우량이 가장 적은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구분	여름(1월)		겨울(7월)	
	최저	최고	최저	최고
WHANGAREI	15.4	24.4	7.2	15.1
AUCKLAND	15.3	23.3	7.1	14.5
HAMILTON	12.8	23.8	3.9	13.6
ROTORUA	12.7	23	3.1	12.1
GISBORNE	13.6	24.9	4.6	14.1
NEW PLYMOUTH	13.6	21.8	5.6	13.3
PALMERSTON	13.4	22.4	4.7	12.5
WELLINGTON	13.4	20.3	6.3	11.4
NELSON	13	22.4	1.6	12.4
CHRISTCHURCH	12.2	22.5	1.9	11.3
TIMARU	11.3	21.1	1.2	10.1
MILFORD SOUND	10.4	18.9	1.3	9.1
QUEENSTOWN	10.7	22.6	0.1	8.2
DUNEDIN	11.5	18.9	3.2	9.8
INVERCARGILL	9.4	18.6	0.9	9.5

자료 <http://www.niwa.cri.nz/edu/resources/climate/maxairtemp>

3) 출장에 필요한 추천 복장

6~8월은 뉴질랜드의 겨울로 한국과 정반대이며 비가 많고 날씨가 쌀쌀하여 여행이나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낮에는 해가 있어 따뜻하기도 하나, 출장 시에도 추, 동복을 준비해 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11~3월은 여름으로 낮에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나 밤에는 선선한 정도인 바, 출장 추천복장으로는 춘추복이면 무난하다.

일조시간이 가장 긴 12월 말에는 저녁 9시까지도 여가 및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며 Mission Bay 등 시내 인근의 주요 지역에는 인파로 붐비게 된다.

나. 시차/근무시간

1) 한국과의 시차(+3 또는 +4)

한국과의 시차는 KST+3(또는 4)시간이며 한국시각 12:00가 뉴질랜드 시간으로 15:00(또는 16:00) 이다.

이는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부터 익년 3월 셋째 일요일까지 일광 절약제(Daylight Savings)를 실시하기 때문인데, 이 기간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4시간이 된다.

2007년 3월 셋째 주부터 2008년 10월 첫째 주까지는 시차가 3시간, 2008년 10월 첫째 주부터 2009년 3월 셋째 주까지는 시차가 4시간 난다.

2) 근무시간

사기업은 물론 관공서의 근무시간은 09:00~17:00가 일반적이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 근무시간은 업무특성상 09:00~16:30이다

상가는 10:00~18:00까지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유입증가 및 이들의 영업시간 확대 및 연장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Countdown 등은 소재지역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생겨나는 등 다양한 업태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 슈퍼마켓도 20:00 또는 21:00까지 영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정부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이며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 일까지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기업은 1.1~12.31 혹은 7.1~6.30을 택하기도 함)

근무시간

관청	월-금	08:30 - 16:30
은행	월-금	09:00 - 16:30
상업권	월-금	09:00 - 17:00
대형쇼핑몰 (Westfields)	월, 화, 수/금/토	09:00 - 18:00
	목	09:00 - 21:00
	일	10:00 - 17:30

다. 도량형

1) 미터법의 사용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과의 차이는 없으며 전기규격은 한국과는 다른 240V 50HZ 3 PIN 플러그를 표준규격으로 하고 있다.

넓이	평	에이커(acre)	제곱야드(yd ²)	제곱피트(ft ²)	아르(a)	제곱미터(m ²)
1 m ²	0.3025	0.00025	1.196	10.7683	0.01	1
1 a	30.25	0.02471	119.6	1076.83	1	100
1 ft ²	0.0281	0.00002	0.111	1	0.00093	0.09287
1 yd ²	0.2529	0.00021	1	9.0038	0.00836	0.83614
1 cre	1224.2	1	4840.04	43578.7	40.4693	4046.93
1 평	1	0.00082	3.95367	35.598	0.03306	3.3058

길이/거리	마일(mile)	야드(yard)	피트(feet)	인치(inch)	미터(m)	센티미터(Cm)
1 cm	0.000006	0.010936	0.0328	0.39370	0.01	1
1 m	0.000621	1.093613	3.2808	39.3701	1	100
1 inch	0.000016	0.027778	0.0833	1	0.0254	2.54
1 feet	0.000189	0.333333	1	12	0.3048	30.48
1 yard	0.000568	1	3	36	0.9144	91.440
1 mile	1	1760.00	5280.0	63360.1	1609.4	160935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에 비치된 전기 플러그는 모양이 달라, 한국의 제품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하여 부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별도의 플러그는 공항 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한국	뉴질랜드
전기규격	220V용 둥근 핀(Pin)	230V용. 3개의 일자Pin
사용시	110볼트 AC 소켓(20와트)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하나 이외의 다른 전기 제품을 사용할 경우 멀티볼트가 아니라면 어댑터나 변압기가 필요함	

라. 출입국/비자

1) 여권 및 비자

뉴질랜드 여행에는 입국 후 출국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함. 양국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 미만 체류 희망 시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뉴질랜드 공항에서 90일 방문허가 스탬프를 찍어 줌)한 데, 이 경우에는 필히 돌아갈(Return) 항공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비자 없이 취업할 수는 없다. 무비자(방문비자)로 3개월 입국시에는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할 수 있다.

비자 종류로는 방문비자 외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뉴질랜드로 이민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영주권 비자 등이 있으며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이민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전화:(02)730-7794)

2) 까다로운 세관검사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만한 병균이나 해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들이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세관검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빈번히 문제가 되는 사례로는 골프신발과 식품(멸치, 미역) 등이며 골프화의 경우 사전에 물로 세척해서 흙이 묻어 있지 않으면 된다.

식품이나 목공예제품, 골프화 등은 도착 전 기내에서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신고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편리하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X-레이 검사에서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능장심사 및 벌금부과)까지 당하게 된다.

반입물품 허용한도는 담배 200개피(1보루),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되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검역청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국 시에 내던 공항세(NZ\$ 25)는 2008년 8월부터 없어졌다.

3) 무비자 입국 주의사항

우리나라와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었다 해서 사전준비 없이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귀국 항공권과 충분한 유효기간의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입국신고서 작성시 여행목적은 명확히 기재하고 일정의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제시하여 관광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테러분자 입국 봉쇄 등 자국 안보를 위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고 여행경비가 충분치 못해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사증 협정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입국목적은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로 한다든지 짐을 직접 꾸리지 않았다고 표기하거나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그리고 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채 화려한 복장을 하는 경우 등은 오해를 살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마. 환율/환전

1) 화폐 단위

뉴질랜드 달러(NZ\$)로서 NZ\$ 1은 100Cents이고, 주화는 10,20,50Cent와 1, 2Dollar 등이 있으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 Dollar가 있다.

2) 환율

98년 이후 아시아 경제권의 금융위기, 세계경제와 자국의 경기침체, 경상수지 적자, 미국 달러 강세로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으나, 2002년 초부터 경기회복 및 6년만의 무역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평가절상 되기 시작하였음.

2005년까지 3년 여간 70% 이상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졌으며, 평가절상은 이 후에도 계속되고 있음.

구분	2005년 말	2006년 말	2007년 말	2008.3월	2008.9월
환율(US\$:NZ\$)	0.68	0.70	0.77	0.80	0.68

자료: EIU 2008.9월 자료 및 국민은행 오uckland 지점

3) 환전

환전은 평일 영업시간에 일반 은행과 공항 환전소 및 주요 변화가의 사설환전소 등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항상 가능하다.

뉴질랜드에서는 US\$10정도만 되면 거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현금을 많이 소지할 필요가 없으나 식품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적지 않은 바,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닐 필요가 있다.

환전환율은 은행, 공항 환전소, 변화가의 사설환전소 중 은행의 환율이 가장 유리(크게는 10% 정도의 차이도 있음)하나, 은행 소재지를 잘 모르는 비즈니스 출장자의 경우 US\$100 정도의 소액은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용카드 사용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개인비밀번호(PIN number)가 부여되었다면 전국의 은행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자동현금 출납기(ATM)에서 현금인출도 가능하다. 여행자 수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바. 교통/통신

1) 교통 및 통신 개요

인구가 많지 않고 국토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데 반해 개인 교통수단이 주류를 이뤄 대중교통 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남 섬과 북 섬을 연결하는 항공, 해상, 철도 그리고 육상편의 공급이 많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5백여 만대에 이르고 있어 1가구 2차량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개인 교통수단의 확산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 2003년 7월에는 오uckland 지역 열차, 버스, 페리 등 전 교통 수단을 하나로 묶는 브리토마트(Britomart) 재건사업이 완료되어 열차문화권 형성과 교통, 휴식 및 쇼핑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이용자 수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동전화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New Zealand Telecom과 Vodafone 가입자수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사용되며, 가구의 54% 정도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35%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이 21%에 달하고 있다.

2) 뉴질랜드 항공노선


뉴질랜드는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부터 익년 3월 중순까지 일광 절약제(Energy Savings)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과의 시차가 기존의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되는 바, 경계기간에는 항공기의 출발 및 도착시간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뉴질랜드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26개사로 국영 AIR NEW ZEALAND와 호주의 Qantas, 일본 JAL 그리고 CX, Singapore Air Line 등이 있고 대한항공(직항)도 운항하고 있다.


관광객이 많은 관계로 연중 항공권 구입이 어려운 지역중의 하나로 사전에 티켓 확보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현지 관광여건이 좋은 여름(보통 11-3월)에는 티켓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직항인 대한항공보다 조금은 저렴하나,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OSAKA공항과 Narita공항을 경유하는 Air New Zealand항공편은 매일 출발하는 날짜와 시간대가 다르다.


Tokyo-Narita Airport – Auckland

Departs	Arrives	Flight Info	Duration	Frequency
06:25pm	09:15am ⁺¹	 NZ0090	10h50m	Wed, Thu


Auckland – Tokyo-Narita Airport Thu 22 Nov 2007

Departs	Arrives	Flight Info	Duration	Frequency
08:30am	04:40pm	 NZ0099	11h10m	Mon, Tue, Wed, Thu, Fri, Sat, Sun


Osaka-Kansai Airport – Auckland

Departs	Arrives	Flight Info	Duration	Frequency
06:30pm	08:15am ⁺¹	 NZ0098	10h45m	Mon

Osaka-Kansai Airport – Auckland

Departs	Arrives	Flight Info	Duration	Frequency
09:00pm	10:45am ⁺¹	 NZ0090	10h45m	Wed, Thu

Auckland – Osaka-Kansai Airport

Departs	Arrives	Flight Info	Duration	Frequency
07:40am	03:40pm	 NZ0097	12h00m	Mon, Sat, Sun

뉴질랜드 내 Auckland와 남 섬의 대표도시 Christchurch간 항공편은 하루 30여 편이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약 편도 NZ\$ 300 (One Way)정도이다. 그러나 시간대에 따라 요금 3배까지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예약은 www.airnewzealand.co.nz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예약으로 가능하다.

3) 우리나라와의 교통(항공편)

인천과 오克兰드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항공이 1993년부터 취항하고 있으며, 2003. 10. 28부터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오克兰드 간 신규 취항을 개시 하였으나 2005. 3. 1부로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을 중단함.

□ 대한항공

매일 1편씩 운항하였으나, 최근의 고유가 파동으로 비수기 기간 중 주 5회로 운항 횟수를 줄였다 (2008.11월부터는 주 7회 운항으로 정상화 예정) (<http://www.koreanair.co.nz/flights.htm>)

From Incheon to Auckland									
Flight	M	Tu	W	Th	F	Sa	Su	Departure	Arrival
KE0823	→		→	→	→	→		19:05	09:25+1
From Auckland to Incheon									
Flight	M	Tu	W	Th	F	Sa	Su	Departure	Arrival
KE0824		→		→	→	→	→	11:05	20:05

4) 국내교통

□ 택시

오克兰드는 많은 택시회사가 영업하는 곳으로, 택시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호텔 등을 제외하면 대기중인 택시가 없다. 모두 콜택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요금은 택시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요금 NZ\$ 2.00 + KM 당 NZ\$ 1.95 정도이다.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 전화번호 (오克兰드)는 300-3000 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된다.

공항에서 시내 중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도로 상황 및 이용 택시 회사에 따라 시간과 요금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오克兰드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약 NZ\$80 정도가 소요되며 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약 35-60분이 소요된다.

□ 버스

버스는 출퇴근시의 러시아워를 제외 하고는 배차 간격이 보통 30~60분으로 운행 회수가 적고 운행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운 바 택시 이용이 권장된다.

□ 공항버스

뉴질랜드의 모든 공항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따라서 숙소 또는 여행지의 중심 상가 지역에서 공항 셔틀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셔틀버스 회사는 융통성을 발휘해 승객의 숙소까지 운행해 주기도 한다.

□ 철도

뉴질랜드의 선로망은 별로 많지 않지만, 철도를 이용한 관광 코스에는 환상적인 코스가 몇 개 있는데, 도로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기차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5) 국제통화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통화: 00(국제 전화번호)+82(한국 국가번호)+2(서울 지역번호)+ 해당 전화번호(예: KOTRA 본사: 00+82+2+3460-7114)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통화: 001 또는 002+64(뉴질랜드 국가번호)+9(지역번호)+해당 전화번호(예: 오클랜드 무역관 1) 한국통신: 001 + 64 + 9 + 373-5792)

한국으로의 수신자부담 전화(콜렉트 콜)는 DACOM과 한국통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DACOM은 0009-080-상대방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누르면 되고 한국통신은 자동 Collect Call(000-982-4번을 누르고 지역번호와 전화번호)과 고국 교환원 전화(000-982-0)을 누른 후 교환원을 통해 전화하는 방식이 있으며 직통 전화는 000-984-지역번호와 전화 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렴한 국제전화 방법은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는 월드폰, 이코노폰(문의 및 신청: 366-0533)을 비롯하여 SMART LINK(문의 및 신청: 309-6360) 등 다수가 있다. 오클랜드-서울 통화가 분당 10센트 미만으로 저렴하며 US\$ 10~20 정도의 전화 카드를 구입하면 8~10시간 통화가 가능한 것이 보통이다.

6) 국내통화

공중전화는 주로 전화카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화 카드를 미리 구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된 부스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화이용이 아주 불편하다. 일부는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전화카드는 Pharmacy, Chemist 또는 Phone Card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소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공항이나 시내 중심가에는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와 동전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으며 요금은 통화당 70센트이다.

공중전화 사용은 먼저 수화기를 들고 시내 통화는 전화번호 버튼을 누른 후 전화기 전면 설치된 스크린의 메시지에 따라 동전이나 카드를 집어넣으면 통화가 가능하다.

7) 인터넷 사용환경

한국에서 노트북을 가져갈 경우 뉴질랜드 방식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 내에는 인터넷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산재한 인터넷 카페(주로 한국인이 운영하며 한국어 버전도 공급)가 많이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 (1시간 US\$ 1.5~2)

8) 특사운송회사 가격 및 사용 방법

가장 손쉽게 특사 운송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에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NZ Post를 이용하는 것이며 TNT Express등도 이용할 수 있다

□ NZ Post 연락처

웹사이트: www.nzpost.co.nz

가까운 지정 문의 무료 전화번호: 0800 113 355

국제 특사운송 문의 무료 전화번호: 0800 736 353

□ 가격

Weight	Australia (Zone A)	South Pacific (Zone B)	East Asia & North America (Zone C)	UK & Europe (Zone D)	Rest of World (Zone E)
0.5kg	\$20.40	\$36.40	\$41.70	\$42.60	\$52.10
1kg	\$26.20	\$38.00	\$52.80	\$52.30	\$70.40
Over 1kg	Documents over 1kg are charged the same as merchandise pricing. Prices are available on the Rate Finder .				

주: 1kg 내외의 서류 발송 시 (1~5일 이내 도착)

사. 호텔/식당

1) 호텔 여건

뉴질랜드는 관광 국가로 호텔이나 모텔이 많아 숙박시설 이용에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가격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나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어느 정도 부담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성수기에는 호텔이용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는데 11~3월 중에는 시내호텔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광객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다.

2) 필수적인 예약 관행

높은 인건비로 인해 호텔 예약은 통상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관행이며 일정 할인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무역관도 현지 출장자나 업무유관 방문객들에게는 여행사에 예약을 의뢰하고 카드로 직접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모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접촉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3) 참고 및 유의사항

관광시즌(11~3월)의 경우와 주요 행사가 있는 경우 호텔 예약이 곤란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비수기(계절요인)를 감안하여 숙박시설을 크게 확충 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일례로 2002년도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바 있는 아메리카 컵 요트대회 개최 때에는 호텔 등 대부분 숙박시설의 예약이 불가능해서 비즈니스 출장 및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 성수기는 물론 대형 행사 때에도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일반 출장자는 시 외곽의 호텔이나 민박, 모텔 등 다른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모텔 등 대부분의 숙박시설이 예약이 불가능(NO VACANCY)하거나 객실요금이 최악의 경우 2배정도 비싸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기간을 피하거나 부수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4) 호텔예약 안내

한국의 여행사가 많아 이들을 통해 예약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예약도 일반화되어 있어 정보 입수 및 예약자체가 어렵지 않음. 많은 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호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약도 처리하고 있고 여행정보 및 호텔정보를 제공하는 곳인 AA센터 (www.nz-accommodation.co.nz)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금은 여행사마다 다르고 관광 성수기인 11~3월이 비싼 편이어서 일반수준의 예시이며 구체적인 요금은 상황에 따라 10~20%내외에서 변동 가능함을 참고요망.

고급 호텔 중 하나인 Stamford 호텔이 건물 증개축 공사 중 이면서 운영하고 있다.

모텔 연락처

Rock Fie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Rockfield Rd. Greenlen. Auckland ○ Tel: (64 9) 579 4525 ○ Fax: (64 9) 579 7403
Aristot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ner Link Dr & Sunnynook Rd. Auckland ○ Tel: (64 9) 444 1177
Takapuna Golf Lo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 Ocean View Rd. Northcote ○ Tel: (64 9) 419 8080
Northland Mo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2 Main North Rd. Papanui .Christchurch ○ Tel: (64 3) 352 8478
Rotorua Gate Mo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22 Hinemoa St.Rotorua ○ Tel: (64 7) 348 1623
Tauranga GardenCou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 Sixteenth Avenue. Tauranga ○ Tel: (64 7) 578 5858

주요 호텔 및 연락처

호텔명	주소
	연락처
The Stamford (신축공사) ★★★★★	Lower Albert St., Auckland TEL : (64 9) 309 8888, FAX : (64 9) 379 6445
Rendezvous Hotel ★★★★★	Cnr. Mayoral Dr. & Vincent St. Auckland TEL : (64 9) 366 3000 FAX : (64 9) 366 0121
Sky City Hotel ★★★★★	Cnr Victoria St., & Federal St., Auckland TEL : (64 9) 912 6000 FAX : (64 9) 912 6010
Hyatt Regency ★★★★★	Cnr. Waterloo Qdt. & Princess St., Auckland TEL : (64 9) 355 1234 FAX : (64 9) 303 2932
Langham ★★★★★	Cnr. Symonds St. & City Rd., Auckland Tel : (64 9) 379 5132 Fax : (64 9) 377 9367
Plaza Int'l ★★★★★	148-176 Wakefield St., Wellington Tel : (64 4) 473 3900 Fax : (64 4) 473 3929
Parkroyal Hotel ★★★★	Cnr Grey & Featherston St. Wellington Tel : (64 4) 472 2722 Fax : (64 4) 472 4724
Copthorne Plimmer ★★★★★	Cnr Boulcott St & Gilmer, Wellington Tel : (64 4) 473 3750 Fax : (64 4) 473 6329
Millennium Hotel ★★★★★	14 Cathedral Square, Christchurch Tel : (64 3) 365 1111 Fax : (64 3) 365 7676
Centra Hotel ★★★★	Cnr Cashel & High St, Christchurch Tel : (64 3) 365 8888 Fax : (64 3) 365 8822 -
Parkroyal Hotel ★★★★	Cnr. Kilmore & Durham Sts., Christchurch Tel : (64 3) 365 7799 Fax : (64 3) 365 0082
Millennium Hotel ★★★★★	Cnr Frankton Rd. & Stanley St. Queenstown Tel : (64 3) 441 8888 Fax : (64 3) 441 8889
Gardens Parkroyal ★★★★	Cnr Earl St &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Novotel Hotel ★★★★★	Sainsbury Rd. Fernhill, Queenstown Tel : (64 3) 442 6600 Fax : (64 3) 442 7354
Millennium Hotel ★★★★★	Cnr Eruera & Hinemoaaru St., Rotorua Tel : (64 7) 347 1234 Fax : (64 7) 348 1234
Novotel Hotel ★★★★★	11 Tutanekai St. Rotorua Tel : (64 7) 346 3888 Fax : (64 7) 347 1888
Rydges Hotel ★★★★	272 Fenton St., Rotorua Tel : (64 7) 349 0099 Fax : (64 7) 349 0900

뉴질랜드 여행객들은 호텔 외에 모텔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모텔은 주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가족단위 여행시 많이 찾고 있음. 성수기에는 Vacancy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필히 예약을 해야 함.

5) 식당 개요

현지 식당은 NZ\$ 10 내외의 FAST FOOD식당부터 최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 하고 24시간 영업하는 일부 카페를 제외하고 영업시간은 11:30-15:00(점심) 및 18:00-21:00 이나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포 및 한국 여행객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음식점이 Auckland에 50여 개, 시외 지역에 20개 이상 있으며 Queen Street 끝에 20여 개의 한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교포 및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이용하는데 유익하다.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현지 활동에 불편함이 없으나 아쉬운 점은 중국, 일본 식당 등과 비교해 볼 때 고급 음식점이나 연회석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일부 음식점만이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가격은 한국보다 약간 비싼 수준이며 특히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로 2~3년 전보다 부담이 되는 반면 식당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 학생과 한국에서 여행 및 비즈니스 출장 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한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교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태의 식당 및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식당의 개점이 매우 활발한 편임.

6) 주요 식당

한식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나 대형 음식점이 없이 분식점 형태에서 중소도시의 일반 식당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늘어나던 때와는 달리 유학생 및 이민자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Auckland 시내는 물론 외곽 지역에도 한식 및 중식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한국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및 특징
미가	09-377-9131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낙원	09-369-1900	시내에 위치하고 연중 무휴 개업
The Koreans	09-355-6770	뷔페 식당으로 해변에 위치
부뚜막	09-309-5060	476 Queen St. City 감자탕. 아구찜. 찜닭. 칼국수. 냉면
왕릉갈비	09-444-0092	43-51Downing St. Glenfield. 갈비. 영양탕. 감자탕. 굴밥
전주식당	09-309-2775	4 Upper Queen St. City BBQ 뷔페

중국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Ding How	09-358-4838	55 Albert Street
Grand Harbour	09-357-6889	Viaduct Harbour 18-28
Sunshine	09-302-3322	39 Market Place. Viaduct Harbour
Dragon Boat	09-379-6996	7-37 Elliot St. City
New Orient	09-379-7793	20 Elliot St. City
취선루	09-444-9987	20 Link Dr. Glenfield ,한국인 경영
태화루	09-488-0166	25 Shakespear Rd. Millford, 한국인 경영
야루끼	09-838-4463	385 Great North Rd. Henderson, 한국인 경영
이화원	09-489-1800	72-78 Hurstmere Rd.Takapuna, 한국인 경영

일본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ARIAKE	09-379-2377	Cnr Albert & Quay Streets
DAIKOKU	09-302-2432	48 Quay St
NIKKO	09-309-8266	239 Queen St., 한국인 경영
GENJI	09-360-5050	26 Ponsonby Rd., 한국인 경영
Katsura	09-366-3000	Cnr Mayoral Drive & Vincent Street
Soto Japanese Garden Restaruant	09-360-0021	17 St.Mary's Rd. Ponsonby 10 NZ Restaruant 순위에 오름
Zipangu	09-376-4565	45 Ponsonby Road. Auckland
Wagamama	09-359-9266	1 Courthouse Lane.CBD

European 식당

Sails	09-378-9890	WestHaven Marina. Westhaven Drive
Soul	09-356 -7249	Viaduct
Aquamatta	09-302-0478	2A/48 Courthouse Lane
Toto	09-302-2665	53 Nelson Street
Orbits	09-363- 3000	Skycity Hotel
Angus Steak House	09-379-9815	35 Albert St.City
Mecca	09-358-1093	85 Customs Street West
Harbourside	09-307-0556	1 st Floor. Ferry Bldg. Quay St
Pompino	09-309-3559	Cnr Quay & Queen St.
Prego	09- 376-3095	226 Ponsonby Rd.Ponsonby

아. 관공서 관행

1) 모범적인 행정조직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행정조직 체계 및 운영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01년 부패지수가 핀란드에 이어 2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정도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은 물론 기업 등 사회 전체가 부정이나 비리는 없는 깨끗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의 모범적인 행정 개혁을 단행한 국가로서 행정편의주의나 관료주의 성향도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조직 구성 및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식이 이러한 부정이나 부패와 거리가 있는 깨끗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전자정부 구현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발표된 미국 브라운 대학 평가에서도 뉴질랜드는 전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2위에 선정될 정도로 정부의 행정 업무에 대한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음.

2) 높은 담당자의 재량권 및 자율권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및 자율권이 높으며 상급자도 업무담당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업무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고 예측이 가능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면담은 미리 약속을 해야 하며 (창구 업무 제외) 청렴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업무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만인 앞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국가로서 차별이나 시혜를 보기 힘들며 정보도 항상 공개되어 있어 민원 소지는 극히 낮다.

3)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일설에 과거에는 이민 기타 관련업무를 처리하면서 한국인들이 제출하는 공문서는 물론 사적인 문서나 신청서 등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이민자가 쇄도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에는 성실성과 정직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어 신청서류나 증빙서 등에 대한 확인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사. 공휴일

1) 휴일 지정방식

2008년도 뉴질랜드의 휴일은 아래 표와 같으며 Waitangi Day와 Anzac Day는 요일에 관계없이 그 날이 휴일이며 나머지 공휴일은 금 또는 월요일로 지정되는데 신정과 성탄절 휴가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로 이월되고 있다.

역사가 짧아서 전반적으로 공휴일은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휴일이 3일에 불과해 10월 말 노동절과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전부일 정도이나 주 5일제 근무와 정식 퇴근이 일반화되어 있어 노동강도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도 공휴일

공휴일 명	공휴일	공휴일 내용
New Year's Day	1월1일-1월2일	신정연휴 2일
Auckland Ann Day	1월 29일	오클랜드/ 북섬 기념일
Waitangi Day	2월 6일	영국-마오리 원주민 조약 체결일
Good Friday	3월21일	부활절
Easter Monday	3월24일	부활절
ANZAC Day	4월25일	현충일
Queen's Birthday	6월2일(첫째 월요일)	영국여왕 탄신일
Labour Day	10월 27일(넷째 월요일)	노동절
Christmas Day	12월25일	크리스마스
Boxing Day	12월26일	크리스마스 익일

주*: 이외에 도시별로 공휴일이 다른 Anniversary Day가 있는데, 오클랜드는 1.28일이었음

2) 출장 지양기간

전반적으로 공휴일이 많지 않아 특별한 출장 지양기간은 없으나 부활절 연휴에는 관공서, 은행, 일부 대기업 등에서 1주일 전후의 휴가 기간을 가지며 사기업의 경우 2주일 정도 휴무임을 고려해야 한다.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의 한달 기간 동안은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연시인 관계로 대부분의 기업, 관공서가 휴무에 돌입하는 바, 의사결정권자들의 접촉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 추진도 어렵다.

이외에 지역별 공휴일은 해당지역만 하루씩 기업 및 공공기관이 휴일인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아. 여행시 유의사항

1) 전반적인 유의사항

뉴질랜드는 유럽성향의 선진국가로서 치안도 안정되어 있고 관광국가로서 외국인이 여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만큼 사고나 건강의 이상 혹은 여행 도중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대사관, 영사관 및 기타 한국관련 기관의 연락처나 비상 연락망을 확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지인들의 성향을 파악해 두는 기본적인 유의사항은 영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의약품 구입 및 병원활용

간단한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은 의사 처방 없이도 Chemist나 Pharmacy에서 구입할 수 있고 관광지나 호텔에서는 구급병원 및 약국의 연락처를 수록한 관광안내 책자를 무료로 제공 하고 있어 이용이 가능하며 사고가 날 경우 국가에서 사고보험으로 치료해 주지만 손해 배상제도는 없음을 참고 요망 바란다.

3) 국민성향 및 생활태도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 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자존심이 강하고 개인주의 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질서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교통질서나 줄서기 등을 위반하면 전혀 무관한 시민 또는 행인으로 부터 지적을 당해 낭패를 볼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친절하지만 금전에 관한 한 외국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진을 찍어 두거나 증인을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게 되는 것은 한국과 별로 다르지 않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아주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인인 마오리족들이 아니면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고,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Mr. Miss 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지칭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을 부르며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한 후 사기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하며 심지어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뉴질랜드 식 영어발음이 알아 듣기 힘들 때도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 주도록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공식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선물제공 및 현지인 대응

한국을 알릴 수 있거나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이면 좋으나 뉴질랜드는 Manuka 꿀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한국의 특산품이 많이 선호되지는 않고 있으며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책자, 비디오 테이프, 한국노래 CD 등이 실용성에서 뒤쳐질지 모르나 생동감 있고 색다른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지리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교류 등을 감안하여 아시아와의 유대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아시아 이민이 늘어나면서 반 아시아 반 이민감정을 가진 현지인이나 유럽 이민자들을 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다.

5) 현지기관 접촉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급자는 담당자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하며 매우 친절하지만 속도는 빠른 편은 아니다. 공무원의 청렴도가 세계적인 수준(2003년도 핀란드에 이어 2위)인 것에서 나타나듯이 모범적인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상 뇌물제공 등을 통한 편의기대는 통하지 않는다.

자. 유용한 연락처

1) 행정 수도의 별도 위치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은 행정 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에 소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Auckland)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분관장 강준형)이 소재해 교민 및 여행객들을 위한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KOTRA를 비롯한 여타 주요 기관들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만 여명의 교민 대부분도 오클랜드에 체류하고 있고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등 3대 도시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다.

2) 유용한 연락처

유용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며 한인사회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발행되는 교민신문(인터넷 서비스 동시제공)인 뉴질랜드 타임즈, 한국신문 등을 활용하면 주요기관 연락처는 물론 필요한 생활정보 다수를 입수할 수 있어 편리하다.

□ 공공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R.O.K.)	Wellington	64-4)473-9073
대사관 분관(Consular Agency)	Auckland	64-9)379-0818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Auckland	64-9)373-5792
대한항공(Korean Air)	Auckland	64-9)914-2000
국민은행 (Kookmin Bank)	Auckland	64-9)366-1000
재뉴 한인회	Auckland	64-9)309-6001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Christchurch	64-3)379-2755
재뉴 한국교민회	Wellington	64-4)478-0688

□ 긴급 연락처(현지기관)

- 화재, 경찰, 구급: 111
- 교통정보: 0900-33-222(Transit NZ)
- 전화번호 문의: 018 (건당 사용료 50센트 부과)

차. 관광 명소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조건과 기후 그리고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관광국가로서 우리나라 관광객도 연간 12만 명에 이르고 있어 뉴질랜드의 5대 관광국가에 들 정도로 인기 있는 지역이다.

관광국가이자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어서 한국에서도 많은 여행상품이 있고 이곳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 관광명소나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 섬의 오클랜드와 로토루아(Rotorua)에서는 1박 정도에 그치고 일정의 상당 부분을 남섬에서 보내는 관광일정을 보내고 있다.

1) 북섬

□ 노스랜드/ 베이오브 아일랜드(Northland/Bay of Islands)

- 파이히아(Paihia)
 - 품격 높은 숙박 시설과 특유의 고급 해산물 음식점이 즐비한 Paihia는 베이 오브 아일랜드의 자랑이며 베이 오브 아일랜드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이곳에서는 유람선이나 보트, 선박 등을 이용한 여행이 유명하다.
- 와이탕이(Waitangi)
 - 와이탕이 조약([hyperlink-about nz](#))으로 유명한 와이탕이는 뉴질랜드의 역사에 깊은 관련이 있다. 1840년 이곳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영국왕실이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바 있다. 조약의 체결 장소였던 트리티 하우스(Treaty House)는 이 지역의 명소이며 또한 여러 마오리 부족을 대표하는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통 마오리 공회당(마라이: Marae)도 있다.
- 러셀(Russell)
 - 뉴질랜드 최초의 수도이며 파이히아에서 배편으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19세기 초 선원들과 상인들의 특이한 행동으로 한때 남태평양의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러셀은 정착초기의 건축 양식을 지닌 건물들과 전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음.
- 케리케리(Kerikeri)
 - 파이히아에서 북쪽으로 약 2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감귤 및 키위 농장과 공예품의 중심지로 도자기나 직물과 같은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 베이 오브 아일랜드는 낚시, 다이빙, 요트, 카약, 돌고래와의 수영 등 바다에서 여러 가지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금빛 모래사장은 휴식을 취하며 선텐하기에 아주 좋다. 대부분 유람선 크루즈는 파이히아 항에서 출발하며 아름다운 섬들과 여러 종류의 바다 새들, 바다표범, 돌고래를 볼 수 있는데 유람선 크루즈는 종류에 따라 1시간에서 종일 코스가 있다.

□ 오클랜드(Auckland)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다양한 관광소재가 있는 상업도시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관광대상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이들을 총괄하여 반나절 혹은 하루 관광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 오클랜드 주변의 관광지
 - Auckland Domain
 - 전쟁기념 박물관
 - 식물원(winter Garden)
 - 동물원(Auckland Zoo)
 - Western Springs Lakeside
 - One Tree Hill
 - 콘월 공원(Cornwall Park)
 - 오클랜드 천문대 (Auckland Observatory)
 - 에덴 동산(Mt. Eden)
 - 지하 수족관(Kelly Tarton's Underwater World & Antarctic Encounter)

- 홉슨 부두 해상 박물관 (Hobson Wharf Maritime Museum)
 - 아트 갤러리 (Auckland City Art Gallery)
 - 파넬 스트리트 (Parnell St)
 - 레인보우 엔드 어드벤처 공원(Rainbow's End Adventure Park)
 - 마운트 이든 (Mt Eden)
 - 데본 포트 (Devon Port)
 - 타마키 드라이브(Tamaki Drive)
 - 해상페리(Ferry)
- 반나절 관광
-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 →에덴동산 →전쟁박물관(마오리쇼 매일11:00,13:30)
→로즈가든(Rose Garden) →지하수족관 →미션베이 해변도로(총 3시간 소요)
 - 버스타워: 매일 09:00 - 16:00 1시간 간격으로 출발 (NZ\$ 36)
 - 예약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 로토루아
-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토루아(마오리 언어로 Roto-호수, Rua- 2번째의 합성어임))는 화산 지대 중심으로 온천, 간헐천 등이 유명하다.
 - 당일 투어: 매일 08:00 오uckland Downtown Terminal Air Terminal 출발(NZ\$135)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오는 당일 일정이 있다.
 - 예약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 와이토모 동굴
- 동굴 속 천장에 가득 찬 수만 마리의 개뿔벌레가 빛을 발산하고 있어 한밤의 은하수를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안겨 주고 있다.
 - 당일투어: 매일 08:00에 오uckland Downtown Air Terminal에서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온다. (와이토모 동굴과 로토루아 동시관광NZ\$145)
 - 예약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추천 당일 코스

로토루아	아그로돔 양쇼-와카래와레와 마오리 민속촌 및 간헐천-진흙열탕- 로토루아 호수- 유허 온천욕	어른NZ\$105 어린이NZ\$89
베이오브	카우리 조림지 - 왕가레이 폭포 - 돌고래 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카우리 시계 박물관	어른NZ\$ 129 어린이NZ \$109
코로만델해안	템즈금광체험 투어 - 와카테테베이 - 엘가리우 베이 - 스톤톤베이 - 타푸 - 코로만델 - 워터웍스	어른NZ\$129 어린이NZ\$109

추천 1박 2일 코스

로토루아/타우포 타조농장	타우포후카폭포-번지점프장-타우포호수-지열발전소-타조농장-아그로돔 양쇼- 와카 마오리 민속쇼-레드 우드 삼림욕- 가버먼트 가든- 로토루아 호수- 유허 온천욕	어른NZ\$ 249 어린이NZ\$199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 조림지 - 왕가레이 폭포 - 돌고래 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90 마일 비치	어른NZ\$259 어린이NZ\$229
코로만델	타이루아-조개잡이-Hot water Beach-위티항아-룩스비치-크루즈탑승-기암절벽의 머큐리섬 투어- 코로만델-워터웍스-타푸-와이오우-와카타베이-스톤톤베이-앵거리우베이- 템즈	어른NZ\$259 어린이NZ\$229

□ 기타

타우포 호수, 뉴플리머스, 코로만델 반도, Bay of Island 등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64-9-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로 하면 된다.

2) 남 섬

□ 크라이스트처치

남섬 동해안 캔터베리 평야 중앙에 위치한 뉴질랜드 3위이자 남섬 최대 도시로 인구는 약 30만 명이며 고딕 양식의 대성당, 웅장한 Saint Paul 등 유럽풍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원도시(Garden City)이다.

□ Mt. Cook

Southern Alps라고 불리는 3,767M의 Mt. Cook과 3,000M 급의 수 많은 봉우리 및 태즈먼, 마티슨, 프란츠조셉, 폭스 등 빙하(헬기 관광 가능)와 푸카키 호수, 테카포 호수, 퀸스타운, 밀포드 사운드 등 수려한 경관을 관광하고 스키를 즐길 수 있다.

□ 퀸스타운(Queenstown)

19세기 초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개발되었으며 근처에는 수준 높은 설비와 규모를 자랑하는 일부록 골프 리조트가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이 라운딩 한 것으로 명성이 높다.

뉴질랜드 관광의 메카로 불리며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를 끼고 있으며 리마커머블스 산맥을 마주하고 있다. 어드벤처 스포츠의 중심지로 급류타기, 제트보팅과 글라이딩은 물론 낙하산 타기, 글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4군데의 번지 점프 장소가 있으며 Kawarau Bungy Centre가 원조를 이루고 있는데 높이는 43미터에서 102미터까지 다양하다.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대표적인 스키장으로는 코로넛 피크, 리마커블 스키장 등이 있다.

□ 기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풍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육도시 Dunedin과 최남단의 도시 Invercargill 등의 관광지가 있다.

- 한국인 여행사
 - 뉴질랜드 호주 투어: 64-9)307-1234
 - 좋은 여행사: 64-9)300-3720
 - Family 관광: 64-9)625-2525
 - 레인보 관광: 64-9)377-1061
 - 하나투어: 64-9)300-3040

이외 약 10개 이상의 여행사가 있으며 이들 여행사를 통하면 호텔 및 다른 예약들을 기준 가격보다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하다.